

연구보고서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2004.9

임병인·김세환

머 리 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아직 미비하여 향후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했던 시기였던 1961년에 도입된 법정퇴직금은 부분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및 실업급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급속한 경제구조 변화, 연봉제 확산과 근속년수 단축 등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생활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어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입법예고하고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도 근로자가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현행 조세체계상 법정퇴직금 중 퇴직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제가 적용되어 분리 과세되나 연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많은 경우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세액이 연금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충실하게 보장되려면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제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세제를 조사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세제 및 연금소득세제를 Simulation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퇴직급여 관련 소득세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9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김 창 수

요 약

1. 서론

□ 연구목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 이상을 퇴직급여 제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가지는 유인(incentive) 중 두 제도에 각각 적용되는 세제체계에 의한 소득세액을 비교한 후에 두 제도에 대한 선호를 보일 것임.
-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현행 퇴직일시금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IRA연금의 세액과 적용한계세율을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기 위해 적절한 세제 체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소득 자료에 기초한 Simulation방법 적용.
 - 소득계층별 그리고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임금액으로 퇴직 소득과 퇴직연금을 직접 계산하여 비교함.
- 사용한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소득계층별 세제혜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2003년 통계청 발표 『도시가계조사』 도시근로자가구의 분위별 가구주 근로소득을 사용함.
-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세제지원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노동부의 200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서 산업별 통계 중 종업원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전산업)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을 사용함.

2.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 퇴직금 세제 체계

— 퇴직금세제체계에서 퇴직소득세액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음.

$$\boxed{\text{퇴직소득}} - \boxed{\text{비과세 퇴직소득}} = \boxed{\text{퇴직소득금액}} - \boxed{\text{퇴직소득공제}} = \boxed{\text{퇴직소득과세표준}} \times \boxed{\text{기본세율}} = \boxed{\text{퇴직소득결정세액}}$$

- 퇴직소득공제에는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년수 공제가 있음.
 - 퇴직급여비례공제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근속년수 공제는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됨.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50만원×(근속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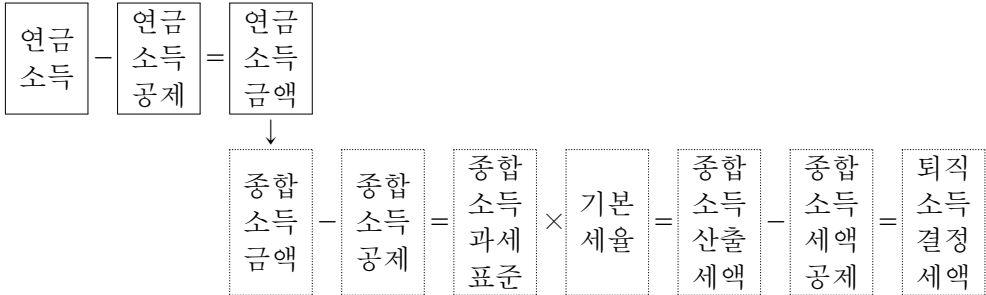
- 퇴직소득공제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출 (연분연승법).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4천만원 이하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8천만원 이하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초과	1,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퇴직연금소득세제

- 연금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및 퇴직보험에 의한 연금의 합계액.
- 연금소득은 급부액 수령시 원천 징수됨 (10%).

— 연금소득 과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이하	총연금액
25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초과	430만원 +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주: 공제액은 600만원이 한도

3.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 미국

- 미국의 퇴직연금은 세제적격플랜, 개인퇴직계좌, 準세제적격플랜, 비적격연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세제적격플랜에는 401(k), 이익분배연금, 종업원저축제도, 주식상여제도, Money Purchase Pension Plan, 종업원 지주 플랜, 확정급여형 연금, Target Benefit Plan, Self-Employed Plans

(Keoghs Plan) 등이 있음.

- 개인퇴직계좌에는 전통적인 IRA, 이관 IRA, 간이종업원연금 (SEP), Simple IRA, Roth IRA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교육용 IRA로서 529 플랜, Coverdell 교육저축계정, College Tuition Deduction, Employer-paid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등이 있음
- 準세제적격플랜(Almost qualified plans)은 세제적격연금 plan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세제적격연금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연금 플랜으로 457(b) 플랜, 457(f) plan, 403(b) 플랜 등이 있음
- 非적격연금 (Non-qualified Plans)은 세제적격연금플랜을 충족하지 못한 연금 플랜을 말함.

— 미국의 퇴직연금세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연금소득 급부액은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신고하며, 자격이 있는 경우 자본차익과세의 세율을 적용받는 10년 평균법(ten-year averaging)을 사용하여 세액계산을 할 수 있음.

- IRA 또는 다른 퇴직연금으로 급부액을 일부 또는 전부 이관할 경우에는 납세시기가 연장됨.
-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조기인출 (59.5세 이전 인출)에 대하여 10%의 연방소득세를 벌칙성 조세 (penalty tax)로써 납부해야 함 (예외 있음).
- 연금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을 수령한 자는 상속세를 직접 납부해야 함. 이 경우에는 59.5세 이하라도 벌칙성 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다만, 적용세율은 분할수령을 통하여 낮출 수 있음.
- 1993년 퇴직연금 급부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어, 연금급부액 수령시 20%를 납부함. 단, 연금 간 직접이관, 세후각출금으

- 로부터 연금수령, 연금급부액을 10년 이상 균등정기금으로 수령, \$200 이하 소액 연금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생계곤란으로 인한 인출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됨. 연령이 59.5세 이하일 경우 10%의 별칙성 조세가 추가로 부과됨. 주의 할 것은 생계곤란으로 인출한 금액은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 準적격연금 플랜의 세제도 세제적격연금과 거의 유사한 체계임.

□ 영국

- 영국의 퇴직연금은 급여관련방식을 채용한 확정급부제도, Money Purchase Schemes 형태를 취하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급여관련 방식과 Money Purchase Schemes를 조합한 혼합형(hybrid schemes)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영국의 퇴직연금은 제도 개선 시기별로 1970년 이전 체제, 1970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 등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퇴직연금 각출관련 세제는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와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로 구분되어 적용됨.
-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에서는 근로자의 각출금은 소득의 15%까지 전액소득 공제되며 연도별로 상한소득이 있음.
-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들의 경우, 사업주 각출금 한도는 없고 근로자의 각출금은 급여의 15%까지 소득공제 대상임.
- 퇴직연금 급부단계의 관련 세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확정급부방식의 경우, 연금급부액은 근로소득 (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2004-05과세년도의 기본세율은 22%임.

- 과세표준액이 £31,400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됨.
 - 전환되지 않은 일시금(lump sum)은 추가소득(extra income)으로서 과세대상임.
 - 연금급부의 최고한도액은 20년 근속이상 최종급여의 2/3 (비과세 포함)이며, 비과세 일시금(tax-free lump sum)은 근속년수 40년의 1년에 대하여 최종상한소득의 3/80 또는 최초연금액의 2.25배로 제한됨 (1970년 이후 세제 체계).
 - 1987년 체제의 비과세 일시금 한도액은 £150,000임.
 - 1970년 이전의 퇴직연금가입자는 연금급부액 중 일부를 비과세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 또한 급부액은 근속년수별로 차등됨.
- 확정기여형에 대한 세제체계는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나, 급부수준은 최종급여가 아니라 각출금 수준, 적립금의 투자수익, 퇴직시 펀드와 연금의 교환비율 (annuity rate) 등에 의해서 결정됨.

□ 일본

- 일본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유형으로 나뉨.
- 퇴직연금세제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급부에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애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음.
 -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공제한 잔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임.
 -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엔×근속년수” 공식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80만엔 이하이면 80만

엔으로 처리됨.

- 근속년수가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0만엔+70만엔×(근속년수-20년)” 공식으로 계산됨.
- 퇴직연금은 雑所得으로 처리하는데, 잡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퇴직연금세제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관련 체계는 다음과 같음.

- 급부에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애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음.
- 일시금과 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함.
- 사망일시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 탈퇴일시금에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가 과세됨.

□ 시사점

— 우리나라와 조사대상 3개국의 퇴직급여 관련 세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제체계가 거의 유사하나,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분류하고 개인연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통일하여 분류함.
- 미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액계산방법에 차이가 없지만, 1936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 우대제도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시켜주고 있음.
- 영국은 일시금(비과세 허용, 한도액 있음)과 연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함.
- 미국과 영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동일한 성격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성격으로 간주함.

— 3개국 세제체계 조사결과가 우리나라 세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퇴직금 세제의 과도한 지원을 줄인 후, 영국 세제 체계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연금세제 혜택을 일시금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퇴직급여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구분되었음에도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구분하여 차별과세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야 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상의 퇴직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가교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배치되므로 최소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공적연금과 달리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처리되고 있음. 동일한 논리로 퇴직연금소득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 중도인출조항(확정기여형 허용, 확정급여형 불허)에 대한 과세조항도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항목임.

4.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결과

□ 기본가정

— Simulation에 사용한 경제변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 이자율은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사용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인상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5.5%)을 사용함.

- 임금은 계산의 편의상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승진 또는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
- 퇴직소득세액을 구하기 위한 임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 소득액을 사용하였음.
- 임금액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금세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03년 『도시가계조사』의 분위별 가구주 근로소득을 사용함.
 - 연령별 임금액은 가입연령, 기업규모, 재직기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부 200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산업별 통계의 산업별 대분류 중 종업원 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전산업)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을 사용하였음.
- 연금소득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에 대해 다음의 가정이 필요하였음.
- 퇴직연금 수급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2명, 특별공제는 표준공제만을 반영하였음.
 -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다른 유형의 소득은 없음.

□ Simulation 결과

- 소득계층별 Simulation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음.
 -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급부기간을 장기간으로 가져갈 유인이 일부 있음.

- 특히, 20년 유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9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훨씬 크게 되어, 현행 세제에서는 이들 계층이 연금으로 전환될 유인을 가짐을 발견하였음.

—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Simulation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과 달리 중간정산을 가정하지 않고 2004년 현재부터 정년까지 해당연령의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였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한 것임.
-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액보다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크게 추정됨.
- 추정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음을 보여줌.

— 이상과 같은 소득계층별 분석과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분석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긴 대기업의 젊은 취업자들은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 세제 하에서는 현재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 중에서 중규모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IRA) 역시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됨.

5.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 기본방향

-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용 Simulation과 동일한 사례로써 도출하였음.
 - 27세에 월평균임금 1,643,178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임금인상률 5.5%와 투자수익률 6%)에 가입하여 정년인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 (예정이율 5.5%, 유지비 0.5%의 기말급 확정연금)을 수령.

- 사례분석결과와 Simulation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세제체계 하에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소득세제에 비하여 불리하나,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 적용한계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추정결과, 10년 (15년, 20년) 근속자일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8년 (14년, 22년) 이상으로 하면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를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출 수 있음.
 - 25년 이상 근속자는 연금수령기간을 35년 이상으로 하여도 퇴직소득세액 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연금소득세제가 세제 측면에서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첫째, 노후보장용 연금소득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중복되어 소득세액이 오히

려 증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입법 예고된 법안 취지에 비추어,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적절한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세부 방안

-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
 - 근속년수가 24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소득세액이 연금소득세액보다 많아져 퇴직연금이 퇴직일시금보다 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었음.
 -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보면,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20~30% 정도로 축소하여도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세제측면에서 유리하였음.
- 둘째, 연금의 연간 수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시켜 과세함.
 - 퇴직금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 근거
 - 과세대상금액이 증가하여 세액도 증액될 수 있으나, 퇴직소득성격에 충실한 적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현행 연금소득세

액보다는 세부담이 감소될 수 있음. 단,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함.

— 셋째,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

- 연금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산함.
- 추정결과, 연금수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근속년수가 16년 미만인 근로자이면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아짐.
- 16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이면 반대로 나타나서 가교연금 기능이 미흡하였음.
-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보아 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낮으나, 연금수급액이 낮아졌음.

— 넷째, 연금소득의 50%를 공제해 주는 연금소득비례공제를 신설.

-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추가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현행 퇴직금에 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섯째,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 현행 의료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여섯째,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

- 이 방안은 외국의 세제체계 중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영국제도와 유사함.
 - 추정결과,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체계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연금수급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음.
 -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퇴직 일시금과 퇴직연금에 거의 유사한 소득세가 부과됨.
- 일곱째, 퇴직관련소득 일원화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적립금액 중 비과세부분에 한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 이 방법 역시 퇴직일시금보다는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
 - 기타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중도 대출을 허용하되, 이 금액을 비과세로 하고 미상환금액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있음.

□ 향후 과제

- 퇴직연금이외에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까지도 반영한 연구, 법인 세법상 기업들의 지출한 퇴직연금 각출금에 대한 분석, 종업원 각출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세제혜택문제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	4
3. 연구방법 및 구성	8
II.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10
1. 퇴직금 세제 체계	10
2. 퇴직연금 관련 세제 체계	13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및 시사점	17
1. 미국	17
2. 영국	40
3. 일본	52
4. 시사점	61
IV.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66
1. 기본가정	66
2. 퇴직일시금의 산출	69
3. 퇴직연금의 산출	74
4.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비교	80
V.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94
1. 기본방향	94
2. 세부방안	99
VI. 결론	113
참고문헌	116

표 목 차

<표 II-1>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12
<표 II-2>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12
<표 II-3> 연금소득 공제액	14
<표 III-1> 신고유형·조정총소득별 공제한도액	27
<표 III-2>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31
<표 III-3> 유형별 각출한도액	32
<표 III-4> 연도별 선택적 각출한도액	33
<표 III-4> 단일생명표(Uniform Lifetime Table)	38
<표 III-5>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43
<표 III-6>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	57
<표 III-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부종류	58
<표 III-8>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세제체계 비교	60
<표 III-9> 국가별 퇴직급여 급부단계별 세제 비교	62
<표 IV-1> 경제변수 추정치	66
<표 IV-2>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2003년)	68
<표 IV-3> 기업규모별·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전산업)	69
<표 IV-4>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70
<표 IV-5> 연령별 임금인상률 가정	71
<표 IV-6>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	72
<표 IV-7> 기업규모별·연령별 IRA 퇴직일시금	73
<표 IV-8> 연금지급 기간에 따른 투자수익률	74
<표 IV-9> 연금의 일시납 보험료	75
<표 IV-10>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76
<표 IV-11>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77
<표 IV-12>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78
<표 IV-1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79
<표 IV-14> 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	80

<표 IV-15> 기말급 연금 현재가치	81
<표 IV-16>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82
<표 IV-1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소득세 현재가치(5년 확정연금)	83
<표 IV-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84
<표 IV-19>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85
<표 IV-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86
<표 IV-21>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88
<표 IV-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89
<표 IV-2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90
<표 IV-2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91
<표 IV-25>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92
<표 IV-26> 개인퇴직계좌(IRA)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93
<표 V-1>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100
<표 V-2>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100
<표 V-3>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101
<표 V-4>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101
<표 V-5> 개인퇴직계좌(IRA) 한계세율비교	101
<표 V-6> 근로소득 공제금액 (2004년 귀속기준)	105
<표 V-7>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사례(근속연수 20년)	109
<표 V-8> 비과세퇴직일시금 지급	111
<표 V-9> 비과세일시금 비율별 소득세 비교	112

그림 목 차

<그림 II-1> 퇴직소득세 과세절차	11
<그림 II-2> 연금소득세 과세절차	15
<그림 II-3>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과세흐름	15
<그림 V-1> 근속년수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96
<그림 V-2> 연금수령기간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98
<그림 V-3> 퇴직급여비례공제 축소	102
<그림 V-4> 연금소득공제 확대	106
<그림 V-5> 연금소득비례공제 신설	107
<그림 V-6> 퇴직관련 소득세제 일원화	110

I. 서론

1. 연구목적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연금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1997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1997. 3. 10.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이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의 3층 보장체계가 완성되었다. 퇴직보험은 도입초기에 세제지원이 미약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997년 말 세법개정에서 퇴직보험에 각출하는 기업 각출금을 손금산입으로 인정하고 퇴직보험금 수령액에 퇴직소득세제가 적용되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퇴직연금제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했던 시기에 퇴직금이 후불임금과 실업급여, 그리고 노후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을 가졌음에도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게 사외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2층 체계로서 기능하는 퇴직연금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지적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춘옥, 2002, p. 82).

한편,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에는 55세로 정년퇴직하게 되면 평균수명까지 약 25년 이상을 취업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¹⁾ 더구나 공적연금인 국민

1) 통계청은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0~2050』, 2001. 12.

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연금의 수령시기를 65세로 연장시켰기 때문에 퇴직 후 약 10년간이 소득의 사각지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퇴직연금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제도 시행의 근거법령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이 2003년에 성안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안은 2003년 하반기에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였다. 현재 퇴직연금 주관부서인 노동부는 동 법안을 200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고 2006년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허용하여 사업자는 둘 중의 하나 이상을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²⁾ 또한 통산장치인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포함시켜 직장이동성, 단기근속자 증가, 중간정산 및 연봉제 확산 등으로 인한 퇴직관련 수령금액이 일시금으로 주로 사용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퇴직할 때까지 계속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할 경우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를 이연시키고 수급권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한 조항으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로서 어느 제도가 더 선호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현행 퇴직금제도를 종업원 입장에서 살펴보면, 퇴직적립금의 사외적립여부가 사업자의 재량이어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실직과 함께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물론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임금채권(최)우선변제

2) 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시행 (2006년 1월 예정) 이후 신설되는 5인 이상 사업장 및 기존 또는 신설 5인 미만 사업장(2008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부터) 등 신규적용 대상 사업장은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으나 수급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또한 세제혜택이 상당히 커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근거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검토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 중 퇴직금 관련 소득세액과 연금수령시의 소득세액, 그리고 적용한계세율과 같은 세제혜택의 우열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행 퇴직금세제에 비해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을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퇴직금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줄여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퇴직금제도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한 각출금도 아직까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출단계의 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된다.³⁾⁴⁾ 왜냐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현행 퇴직보험에 대한 사외적립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고, 또한 조만간 도입, 시행될 퇴직연금에 대한 각출금에 대한 세제 역시 동일한 논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과세 이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퇴직금제도와 두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과의 선택문제는 주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연금에서는 규약에 의하여 가입자인 종업원도 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가입자 각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변경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급여제도의 실질적인 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출단계의 세제가 사용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종업원들이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의 논의 전개에는 퇴직연금 각출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현행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로 급부단계의 과세로 국한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시각에서 급부단계의 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퇴직금 관련 세제와 현행 세법상 연금소득세제가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하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고, 통산장치로 도입된 개인퇴직계좌(IRA)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

퇴직연금의 세제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문 (1998), 손성동·김상의 (2001), 전영준 (2001) 등에 국한되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⁵⁾

양성문(1998)은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퇴직연금제도를 개괄하고 각국의 연금세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손성동·김상의(2001)는 퇴직연금세제의 기본원리를 우리나라의 관련 세제 내용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의 개선방향을 잘 제시하였다. 특히 조세지출까지도 반영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되고 있다.

전영준(2001)은 2000년 세법개정에서 우리나라 연금과세체계가 연금각출단계에서는 과세(Taxed), 운용단계에서는 면제(Exempt), 급부수령단계에서 면제(Exempt)되는 TEE형에서 EET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시 과세체계도 2000년 개정 체계를 그대로 따를 것을 제안하면서, 현행 연금과세체계의 미비점을 퇴직연금 도입시점에 즈음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세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보험료를 동시에 감안한 포괄적인 연금납입

5) 참고로 개인연금관련 세제체계에 관한 연구로는 김원식(1996), 배준호(1996), 정요섭 (1999, 2001, 2003), 정운오·박찬웅(2001) 등이 있다.

액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세계혜택이 고소득근로자에게 과도하게 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의 기준소득에 상한을 두어야 하고, 퇴직금의 퇴직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수준을 줄이되, 퇴직급여충담금의 사내 적립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노동고용비용 증가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기업부담을 퇴직연금 도입 시기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개선방향의 검토 기준으로 현행 연금과세체계, 세부담의 적정수준 유지, 이중과세 방지,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전영준·한도숙(2000)은 연금과세 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주로 개인연금의 저축증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일반균형모형의 정책simulation을 실행하여 세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책으로 인하여 민간저축수준이 감소되어 세원감소와 함께 조세수입이 감소되었고, 둘째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대체할 경우 민간저축률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후생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셋째 EET유형의 연금과세제도는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0년 연금과세 개편안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퇴직연금도입을 위한 세제개편방향으로서 첫째,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를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기존의 퇴직금에 대한 수급권을 퇴직연금수급권으로 전환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연금지급을 위한 기금적립을 점진적으로 하고, 이 적립금에 대하여 100% 비용처리를 허용할 것, 둘째 일시금형태의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연금 선택이 일시금 선택보다 높은 수준의 세후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춘옥 외(1999)는 1998년에 도입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

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도를 퇴직연금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춘옥(2002) 역시 근로기준법 1997년 개정 (법 제34조 제4항)이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행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퇴직금제도와 외국의 노사간 자발적인 자율계약관계로 행해지는 퇴직연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세제 우대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지지이론과 반대이론을 요약, 정리하면서 과세원리상 퇴직연금세제 우대조치는 형평성과 중립성을 해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중립성 저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조세우대제도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엄격한 세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세제적격기준 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세제적격기준에 대하여 논의한 뒤, 우리나라의 세제적격요건을 기본적 요건과 일반적 요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방하남(2001)은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 퇴직금제도의 과세체계,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개정연금과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정운오·박찬웅(2001)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과세제도의 유형을 정운오·박찬웅(2001)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 소득공제한도 및 비과세 적용 여부를 세분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 절세액 만큼을 다른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세후이자율로 부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정모형을 이용했음에도 정운오·박찬웅(2001)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적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세율이 변하지 않으면 연금수령액이 매우 많지 않은 한,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나 세율이 상승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함을 실증하였다. 개인

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연금불입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전제 하에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개정제도가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반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불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하락하면 개정제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율이 상승하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였다. 즉, 연금수령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한계세율의 하락폭이 클수록 개정연금제도의 과세이연효과가 극대화됨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퇴직금관련제도의 문제점 중 급부단계의 세제상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퇴직일시금과 10년, 20년, 30년 분할 연금수령시의 부담세액을 비교하였는데, 2005년도부터 적용할 소득세법상 일시금 수령시보다 10년, 20년을 분할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의 세액부담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30년 연금 제외).

해외 연구로써 Disney와 Whitehouse(2001)가 있는데, 그들은 연금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이 정부가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평균소득 근로자에 비해 평균소득 수준의 연금을 받는 연금생활자의 조세부담률이 OECD 9개국 평균으로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평균소득을 가진 정년퇴직자의 연금소득 대체율 중 1/5정도가 연금제도 자체보다는 조세차별로 인한 것임을 밝혔고, 또한 퇴직소득세에 관한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부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소득계층과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로 산출하여 고급여근로자와 저급여근로자 그리고 회사규모 및 재직기간, 그리고 연령별로 세액과 세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둘째, Simulation 기법에 의한 추정결과와 외국의 관련 세계체계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조기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시한

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다. 셋째, 퇴직연금관련 법안에 제시된 통산장치인 개인퇴직계좌(IRA)의 유용성도 실증적으로 보였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급부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세액 및 적용한계세율 등을 비교하기 위해 Simulation 기법을 채택하였다. 퇴직소득과 퇴직연금은 소득계층별, 그리고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임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차이를 보기 위해서 2003년 통계청 발표 『도시가계조사』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을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최고소득층인 10분위까지 총 10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세제혜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직장취업연령을 27세, 35세, 그리고 40세 등 3개 연령층으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계산, 비교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를 급부단계 체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각출 및 급부단계를 중심으로 상세히 논의하고 국가별 세제체계의 차이점을 요약, 정리하여 외국 세제들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세제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퇴직계좌에 의한 퇴직연금을 Simulation 방법으로 소득계층별, 취업연령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각각 산출하고 적용한계세율과 납부세액을 비교한다. 또한 통산장치인 개인퇴직계좌(IRA)가 세제측면에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실증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세제상 어떤 혜택을 연금소득세제에 도입해야 하는지를 제3장에서 살펴본 외국의 세제체계와 관련지어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요약,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II.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소득의 현행 세제체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퇴직금 관련 세제체계는 각출, 운용, 급부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급부단계에 적용되는 세제만을 살펴본다.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일시금만 있었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다. 1997년에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고, 2002년부터 연금소득세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퇴직금관련세제는 퇴직소득세제와 연금소득세제로 이원화되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일시금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있다.

1. 퇴직금 세제 체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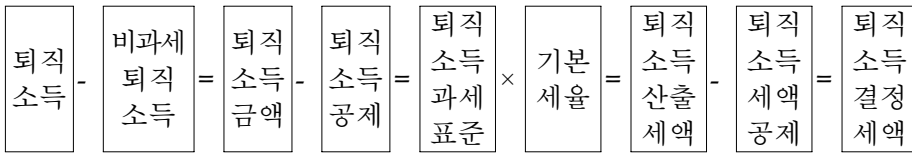
먼저 퇴직금관련 소득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래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강제된 것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해고수당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의 실직 이후의 실업급여 또는 은퇴 후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이 더해졌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1개월 임금)을 지급하며, 일시금지급이 원칙이다. 퇴직금제도는 여전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 이하 기술내용은 주로 박홍민·이경희(2002)를 참고하였다.

데, 이는 일시금을 일단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된 채로 정상적인 은퇴시기 이후로 수령을 연기하는 통산장치의 기능이 없어 대부분 일시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가 사업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급권을 일부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인 임금채권(최)우선변제제도(최종 3년분에 한정되므로 사업자 재산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와 임금채권보장제도(최종 3년분으로 510만원이 상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음)가 있음에도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절차 및 세액산출방법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퇴직소득세 과세절차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이나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분리과세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14조).

<그림 II-1>에서 보듯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 퇴직공

1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과 같은 비과세퇴직소득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면 퇴직소득금액이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순차로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를 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퇴직소득공제에는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가 있는데, 전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에 따라 <표 II-1>과 같이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표 II-1>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 - 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공제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산출한다.

<표 II-2>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4천만원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8천만원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초과	1,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현재는 일정한 공제한도(근속연수×12만원)를 가지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의 25%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퇴직세액공제는 본래 2000년 12월 29일 개정에서 삭제되었으며, 경과조치로 2003년 1월1

일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²⁾

지금까지 살펴본 퇴직소득세 체계에 따르면, 퇴직소득세 적용세율은 근속년수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9%의 최저세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따라서 일단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에 다른 비과세금융상품이나 저율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더욱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연금으로의 전환을 기피하여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2. 퇴직연금 관련 세제 체계

우리나라의 연금과세체계는 2000년 대폭 개정되어 2001년부터 각출단계 면세(Exempt), 운용단계 과세이연(Exempt), 급부단계 과세(Tax)되는 EET형 체계가 구축되었다.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적연금 각출금은 사용자 기여분은 전액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되고(소득세법 제12조 4호-하), 개인 기여분은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소득세법 제51조의 3). 개인연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 2에 의해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에 대해 240만원 내에서 불입액을 공제하고, 연금 급부시에 소득공제가 허용된 부분에 만 연

2) 따라서 본 연구는 세액공제가 폐지될 2005년 적용세법을 기준으로 Simulation을 실행하였다.

3) 이 같은 사실은 제4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4) 공적연금은 각출금 납입액이 전액 소득 공제되고 연금 급부시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전형적인 EET형임에 반해, 개인연금은 납입시 소득공제 한도가 있고 연금 급부시에는 소득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제한적인 EET형이라고 볼 수 있다.

1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금소득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계약자가 불입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는 소득세법 제4조, 제14조, 제20조의3, 제47조의2 등에 규정되고 있는데, 퇴직일시금과 달리 분리 과세되지 않고,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연금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공적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및 퇴직보험에 의한 연금,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이 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1항).

<표 II-3> 연금소득 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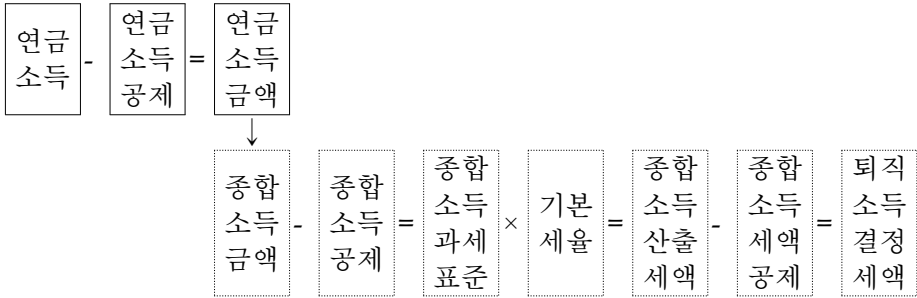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이하	총연금액
25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250만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3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초과	430만원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주: 600만원이 한도임

이렇게 산출된 연금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의할 점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연금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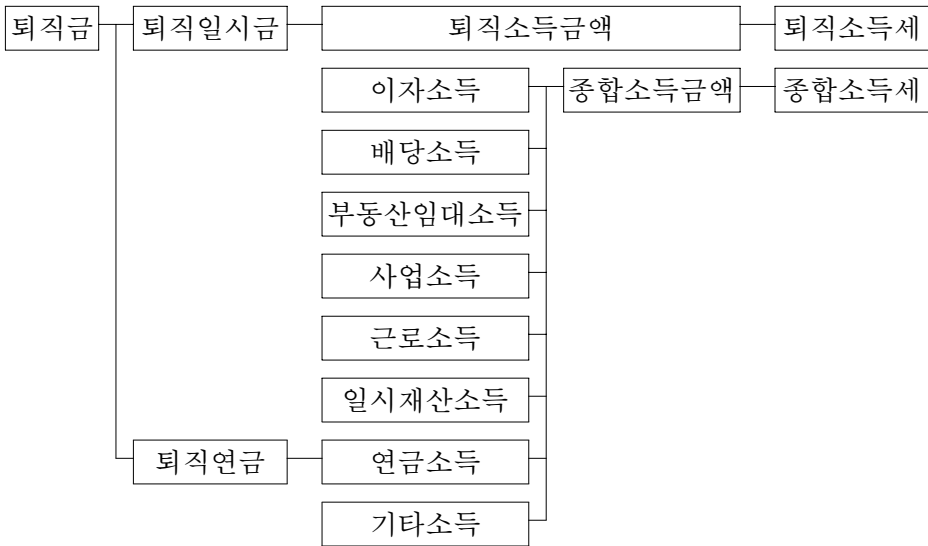
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그림 II-2> 연금소득세 과세절차



이상과 같이 살펴본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과세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과세흐름



주: 박홍민·이경희 (2002), p. 50에서 재인용.

1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현행 연금소득세제 체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근거하여 연금과세가 EET형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연금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연금소득과세기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각출분을 기초로 적립된 부분에서 수령하는 것부터만 연금소득의 과세대상이며, 퇴직보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수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⁵⁾

연금소득세제의 문제점을 퇴직소득세제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하면, 첫째 분리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액이 높아져 세액이나 적용한계세율이 이전보다 많을 수 있다. 둘째, 연금소득 공제금액이 퇴직소득세의 퇴직급여비례 및 근속년수 공제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세제상 세액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연금소득세제가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5) 공식이란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다.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퇴직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퇴직연금의 유형과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plan이 주로 확정기여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영국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두 유형의 혼합형 상품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2001-2002년의 연금개혁이전에는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 상품이 주종이었으나, 개혁 이후에는 확정급여형과 미국의 401(k) 연금 플랜을 모방한 일본판 401(k),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3개국의 연금제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출 및 급부단계의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를 논의한다. 운용단계관련 체계는 급부시까지 과세 이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논의하지 않았다.

1. 미국

미국은 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기여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퇴직연금plan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 뒤, 퇴직연금 plan별로 각출단계와 급부단계로 구분하여 세제체계를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의 유형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는 그 성격에 따라 세제적격(qualified) 연금plan,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세제적격연금 plan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세제적격연금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고 있는 연금 plan인 準세제적격(Almost qualified) plan, 세제적격연금 plan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

1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금 plan인 非적격연금(Non-qualified) plan 등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세제적격퇴직연금 (Qualified Retirement) Plan¹⁾

세제적격연금 plan에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연금plan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s)형 연금plan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401(k) plan과 이익분배연금 (Profit Sharing Plans), 종업원저축제도(Thrift Saving Plan),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 Money Purchase Pension Plan(이하 MPP plan),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종업원 지주 plan), Target Benefit Plan, Self-Employed Plans(Keoghs Plan) 등이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 연금plan을 살펴본다.²⁾ MPP plan과 마찬가지로 연간 각출금을 납입하지만, 각출금이 MPP plan과 달리 개인계정에 할당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대규모 계정을 유지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특정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종업원의 최종급여, 근속연수 등에 의해 정해진다. 일단 퇴직연금액이 정해지면 회사의 연간 각출금액은 임금인상률과 투자수익률 등을 감안한 연금 수리기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 plan은 다른 적격연금에 비하여 복잡하고 관리비용이 높아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급부수령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³⁾ 급여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퇴직시에 일정액(flat amount)을 수령하는 방법,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급여의 일정비율(flat percentage)을 수령하는 방법, 근속연수 1년당 매월 일정액(fixed benefit amount)을 수령하는 방법⁴⁾, 근속연수 또는 가입연수 1년당 급여의 일정비율을 수

1) 적격연금의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성문(1998)과 손성동·김상의(2001)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이는 Pension Plan이라고도 한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성문(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4) 근속연수 1년당 매달 \$30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10년 근무시 매월 \$300

령하는 방법⁵⁾ (Unit Benefit Percentage Formula) 등이다.

다음은 확정기여형 연금plan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째, 이익분배연금 (Profit Sharing Plans)은 종업원에게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사이익을 종업원퇴직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연금plan을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익이 났더라도 반드시 각출금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

둘째, 종업원저축제도 (Thrift Saving Plan)는 종업원들의 연금plan 참여를 강제하는 일종의 확정기여형 연금plan이다. 사업자는 연금에서 규정된 일정한 공식의 종업원 각출금에 대응하여 각출금을 납입한다. MPP plan 또는 이윤분배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사용자들이 개설한 다른 연금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셋째, 주식상여제도 (Stock Bonus Plan)는 이익분배제도와 유사하나 사용자가 종업원들에게 연금급부액을 회사주식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연금plan이다.

넷째, MPP Plan은 사용자들이 각출금을 각 참여자의 개인계정에 할당시킨다는 점에서 이익분배제도와 유사하지만, 사용자는 각출금을 개인계정에 반드시 불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PP plan은 비교적 개설과 관리가 용이하고 종업원에게 설명이 쉬운 장점이 있어 중규모 및 대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섯째, 종업원 지주제도(ESOP)는 일종의 주식상여제도이나 추가적으로 MPP plan특성도 가진다. 종업원이 자사 주식으로 연금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한, 현금으로 급부액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여섯째, Target Benefit Plan이 있는데, 이는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일부 반영한 MPP plan의 변형이다. MPP plan과 마찬가지로 Target

를 수령하는 방법이다.

5) 급부공식이 근속(가입) 1년당 월급여의 2%를 수령하는 것이면, 월 \$2,000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년을 근무했다면, 월 \$800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2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Benefit Plan의 각 가입자들은 별도의 계정을 가진다. 각 계정에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각출하는 대신에 사용자들은 각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액을 추정해야 한다. 첫째의 각출금은 확정급여형과 똑같이 계산한다. 각출금 공식은 특정한 금액이거나 급여의 일정비율이다. 첫째 이후의 각출금 공식은 고정된다.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작아져서 초기 가정이 틀려지면, 퇴직계정의 목표금액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출금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기대치보다 커지게 되어 종업원 퇴직급여가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증가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자영자 퇴직연금 (Keoghs plan)으로서 이익분배제도, MPP plan과 같은 확정기여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정급여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는 있지만 Keoghs Plan은 대부분이 세제적격이다. 세제적격 연금 plan이 되려면, 21세를 초과하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은 모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자신을 위해 적립하고 또한 종업원을 위해서 같은 비율로 각출해야 한다. 이 plan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덟째, Cash-Balance Pension Plan은 일종의 이익분배제도와 확정급여형연금의 혼합형(hybrid) 상품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세제적격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규정, 규칙, 그리고 제약이 있다. 둘째, 퇴직연금에 대해 각출한도액이 있다. 셋째, 모든 적격종업원은 법령에 의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관리 및 회계처리, 연금수리 및 법률관련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다섯째, 59.5세 이전의 인출은 일정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벌칙성 조세(penalty tax)를 납부해야 한다. 여섯째, 가입자 사망시에 수령하는 연금은 연방상속세 외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곱째,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액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여덟째, 소득공제대상

각출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급부액을 수령하게 되는 퇴직 이후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⁶⁾

개인퇴직계좌에는 첫째, 전통적인 IRA로서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스스로 IRA를 개설해서 각출금을 적립할 수 있는 plan이다. 둘째, 이관(Rollover) IRA로서 세제적격연금에서 급부액을 받은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IRA에 예치가 가능한 plan이다. 참고로 2001년 연금법(2001 Pension Law)은 기존의 소득공제가능(deductible) IRA와 이관 IRA의 차이점을 없앴다. 셋째, IRA의 특별유형으로 간이종업원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 또는 자영자 모두 개설할 수 있는데, 주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용한다. SEP은 개별적으로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제적격연금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SEP은 개설과 관리가 간편하고 다른 IRA에 비하여 각출한도액이 높은 장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여와 수급권규칙(vesting rule)이 세제적격연금보다 불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EP를 결정한 사용자는 가상적으로 모든 피용자를 대신해서 각출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대상이 항상 100%여야 한다. 이는 퇴직시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연금급부액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제(part-time)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plan이다.

넷째, Simple IRA가 있다. 10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IRA로서, 401(k) plan이나 이윤분배연금 plan과 같이 종업원급여 중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연금plan이다. SEP과 마찬가지로 Simple IRA에 대한 기여금은 각 개인의 계정에 일정비율로 예치된다. Simple IRA는 IRA형과 401(k) 형으로 구분된다.

6) 일부에서는 IRA를 개인연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IRA형 Simple IRA plan은 이전 2년간 소득이 \$5,000 이상이고 당해 연도에 \$5,000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들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401(k)형 Simple IRA plan은 401(k) plan의 적용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섯째, Roth IRA가 있다. 연간 각출액 한도는 전통적인 기여(contributory) IRA와 유사하나, 인출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plan이다.

IRA plan에는 교육관련 상품들이 많은데, 이는 연방정부가 각종 교육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육관련 저축에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속하는 상품으로 529 plan (Qualified Tuition Programs),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이전의 “교육 IRA”), College Tuition Deduction, Employer-paid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등이 있다.

3) 準세제적격(Almost qualified) Plans

準세제적격플랜(almost qualified plans)에는 첫째, 403(b) plan인 세제이연연금(Tax-Deferred Annuity: TDA)이 있다. 공립학교와 비과세 기관(Section 501(c)(3)에 규정)⁷⁾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Section 403(b)에 의해 허용된 연금 plan이다. 403(b) plan에는 종업원의 세전급여를 403(b) plan에 할당하는 것과 사용자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각출(종업원의 선택적 각출도 가능)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403(b) plan은 세제적격 plan의 요건 중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을 받아들였다. 하나는 각출금은 일정 한도까지 종업원의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각출금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

7) 비영리 병원, 비영리 nursing home, 사립학교, 단과 및 종합대학, 자선기관 등을 말한다. 단, 해당 학교 이사회의 이사들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져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기금운용수익이 급부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된다는 것이다. 403(b) plan은 어떤 종업원이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200이상을 각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선택적 각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모든 종업원들이 선택적 각출을 해야 하는 非차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주 20시간미만 근무하는 자와 非거주 외국인 등은 적격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457(b) plan로서 급여의 일부가 총소득에서 배제되고 기금운용수익이 과세 이연되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457(b)규정을 충족하는 plan이다. 주로 주 및 지방정부와 기타 비과세기관⁸⁾에서 활용하는 plan이다. Section 457(b) pla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사용자가 Section 457(b)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plan이고, 다른 하나는 충족하지 못하는 非적격 plan(457(f) plan)이다. 적격가입자는 전일근무자, 시간제 또는 계절노동자, 임시직, 독립계약근로자 등이 해당되지만, 457(b)규정은 상기 모든 유형의 근로자가 강제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非적격연금 (Non-qualified) Plans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이연현금상여(deferred cash bonuses), Stock Certificate or Stock Options 등과 같은 금전적 유인 제도를 제공하는데, 이는 401(k)의 적격연금요건 중 非차별요건에 위반되어 非적격연금이 된다. 이 plan의 특징은 사용자의 각출금은 공제되지 않고 연금자산은 신탁보유가 요구되지도 않으며 개별 참여자들의 자산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 퇴직연금 plan의 세제체계⁹⁾

8) 비과세기관이란 주정부, county, 시, town, 공공도서관, 수도 및 관개시설 기관, 공공병원, 공원관리공단, 소방서, 지역전기공사, 또한 사립단과 및 종합대학, 사립 비영리병원, 박물관, 신용조합, 농업인단체, 과학 및 연구기관, 사립초중등학교, 공공법률법인, 동물원 등을 말한다.

2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퇴직연금 plan의 세제체계에 대해서는 각출단계와 급부단계의 세제를 중심으로 앞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별로 논의한다.

1) 세제적격퇴직연금 plan

가)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연금plan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아닌 사용자만 각출하며 그 각출금은 손금 처리된다. 또한 각출금은 종업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연간 급부한도액은 가입자 급여 중 가장 높은 3년 동안의 평균급여의 100%와 \$160,000 (2003년 말 기준) 중 낮은 금액이며, 한도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5,000 단위로 증액되며, 최대급부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을 가입해야 한다. 급부는 일반적으로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며, 유자격자일 경우 10년 평균법도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IRA로도 이관이 가능하다.

나)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s)형 연금plan

① Profit Sharing Plan, MPP Plan, Target Benefit Plan, Stock Bonus Plan과 ESOP

확정급여형 plan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아닌 사용자만 각출하며 그 각출금은 손금 처리된다. 사용자 각출금은 종업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 계정에 대한 연간 각출한도액이 급여의 100%와 \$40,000 중 작은 금액인데(2002년 이후 불변), 한도액은 물가와 연동된다. 사용자에게 의한 연간 각출한도액은 종업원 급여의 25%까지이다.

급부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10년 평균법이 적용되

9) 이상의 내용은 Slesnick and Suttle (2003), J.K. Lasser Institute (2003), Westbrook (2001)을 종합하여 plan 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며 IRA로 이관이 가능하다. Target Benefit plan의 급부금은 Level percentage plan일 경우, 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고 근속년수에 따라 감액이 되는데 반해, Yearly Accrual법에 의하면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주식상여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는 연금 급부액은 다른 plan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10년 평균법 적용과 IRA로 이관이 가능하다. 또한 종업원은 전통적이고 소득 공제 가능한 IRA (한도가 있음), 전통적으로 소득공제 가능하지 않은 IRA, 그리고 Roth IRA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급부를 수령할 때 받은 주식의 수익은 매각 때까지 과세 이연된다.

② 종업원저축제도 (Thrift Saving Plan)

종업원 각출금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대응하여 각출된 사용자 각출금은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립금에 대한 투자수익은 과세 이연된다. 총급여의 2~6%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기초각출금과 종업원 추가각출금의 합은 16%를 초과할 수 없고, 기업의 대응각출금도 가입자 급여의 25%로 제한된다. 연금급부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Self-Employed Plan (Keoghs Plan)¹⁰⁾

각출금이나 급부액은 순소득(net earnings = 총소득 - 기여금)에 따라 달라지며, Profit sharing plan일 경우, 2001년의 각출금 한도액은 순소득의 15%와 \$25,500 (2002년 \$30,000)중 작은 금액이다. Keoghs Plan을 초기에는 Profit Sharing Plan으로 운영하다가 안정적인 상황에 도달한 후, MPP plan으로 전환시킨 경우, 2001년 기준의 각출금 한도액은 순소득(\$170,000)의 25%와 \$30,000 (2002년 \$35,000) 중 작은 금액이다. Keoghs Plan을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할

10) HR-10 plans라고도 한다.

2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경우에는 복잡하지만, 자영업자가 40세가 넘을 경우 각출금 증액이 허용된다. 그러나 계리사를 통해 매년 각출을 조정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영업자이자 종업원¹¹⁾인 경우 반드시 모든 전일근무자를 위해서 각출해야만 본인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급부금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Section 401(k) plans

사용자의 각출금 한도액은 종업원 총급여의 25%이며 한도액까지 손금 처리되며, 사용자 각출금 역시 종업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종업원 개인계정에 대한 사용자 각출한도액은 급여의 100%와 \$40,000 중 작은 금액이며, 종업원의 선택적 각출 한도액은 역년 (calendar year) 기준으로 \$12,000로 제한된다. 만약에 50세가 넘으면 \$2,000을 추가로 더 각출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주의할 것은 이연된 총금액이 非차별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업원은 전통적이고 소득공제 가능한 IRA(한도 있음), 전통적으로 소득공제 가능하지 않은 IRA, 그리고 Roth IRA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급부인출은 퇴직, 사망 또는 장애, 59.5세에 이르렀을 때, 생계 곤란시에 가능하다. 급부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10년 평균법 또는 자본차익처리방법도 적용이 가능하나 1936년 이전 출생자에게만 해당된다. 역시 IRA로 이관이 허용된다.

2)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가) 전통적 비공제형 · 전통적 공제형 · Roth IRA

각출한도액은 급여의 100%와 \$3,000(기혼자 \$6,000) 중 작은 금액(2002-2004년 적용)인데, 2005-7년은 \$8,000, 2008년 이후에는

11) 자영업자이면서 종업원(owner-employee)이란 단독소유자 또는 지분(또는 이윤)의 10% 이상을 소유(또는 수령)하는 partner를 말한다.

\$10,000로 증액될 예정이다.

<표 III-1> 신고유형·조정총소득별 공제한도액

구분	다른 연금 Plan 미가입	다른 연금 plan 가입*	
미혼 (단독신고)	각출한도액: \$3,000	<u>조정총소득</u>	<u>공제한도액</u>
		\$40,000미만	\$3,000
		\$40,000-\$50,000	점감
		\$50,000 초과	공제불인정
기혼 (합산신고)	각출한도액: 배우자 IRA를 포함하여 각각 \$3,000	<u>조정총소득</u>	<u>공제한도액</u>
		\$60,000미만	\$3,000 (배우자: \$6,000)
		\$60,000-\$70,000	점감
		\$70,000 초과	공제불인정
기혼 (분리신고)	부부가 취업중일 경우 각출한도액: 각각 \$3,000	<u>조정총소득</u>	<u>공제한도액</u>
		\$10,000미만	점감
		\$10,000초과	공제불인정

주: 2003년 기준금액.

특징적인 것은 전통적 비공제형·Roth IRA가 각출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 공제형 IRA는 각출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가 적격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하다. 단, 조정총소득이 \$150,000이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총소득이 \$150,000과 \$160,000 사이면 공제액이 점감(漸減)된다.¹²⁾

12) 조정총소득은 총소득액에서 소득조정항목을 차감한 것이다. 이 때, 소득조정항목은 표준공제자, 실제공제선택자의 구별 없이 또한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필요 경비성 경비일체, 이혼위자료 지불액, 개인연금계정(IRA)의 예금액, 자영업자의 퇴직금 계정에의 전환금, 정기예금 해약위약금(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미국 내국세청에

2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160,000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타의 경우는 <표 III-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III-1>를 2002년 기준금액으로 점감구간(phase-out)에만 적용해보면, 미혼 단독신고는 조정총소득이 \$34,000-\$44,000 (2005년 \$50,000-\$60,000증액 예정), 기혼합산신고는 \$54,000-\$64,000 (2007년까지 \$80,000-\$10,000으로 매년 증액 예정)이 된다. 기혼 분리신고는 <표 III-1>과 동일하다.

Roth IRA는 매년 1월1일부터 연방소득세 신고기간(통상 4월 15일까지, 단, 연장기간 미포함)까지만 개설이 가능하다. Roth IRA 각출금의 소득공제 한도액 점감구간은 다음과 같다. 미혼 단독신고자의 경우, 조정총소득 \$95,000-\$110,000, 기혼 합산신고자 \$150,000-\$160,000, 기혼 분리신고자 \$0-\$10,000이다. 다른 IRA plan과 달리 70.5세 이후라도 소득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각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초과각출은 초과금액의 6%가 벌칙성 조세로 부과된다.

인출금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非공제대상 각출로 인한 적립 부분은 제외된다. 전통적 공제형 IRA에서는 모든 급부금이 과세되며, 급부금은 70.5세가 되는 그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인출하여야 하며 최저지급요건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전통적 비공제형 IRA에서 각출금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Roth IRA의 적격급부금¹³⁾은 비과세대상이며, 어떤 연령에서도 각출이 가능하며 인출개시 의무연령도 없다. 가입자가 생존하는 한 최저지급금액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나) SEP

보고하여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 등을 말한다.

13) 적격요건은 소유자가 59.5세를 넘거나, 사망, 장애, 최초로 주택비용(구입 및 수리 포함)에 사용할 경우 \$10,000(단, 이 금액은 인출 후 12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함)까지 등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5년 이상 가입은 기본조건이다.

각출한도액은 종업원 1인당 \$40,000(2003년 기준)과 급여의 25% 중 작은 금액이다. 자영업자 본인은 \$40,000과 20% 중 작은 금액이다. 2003년 기준으로 급여한도액은 \$200,000이며, 사용자 각출금은 손금 처리되나, 연간단위의 각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각출금액 역시 근로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출시기는 종업원의 연방소득세 신고기간(연장기간 포함)까지 가능하다.

급부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며, 최저지급요건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급부액은 수령 연도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일시금 인출에 대해서 10년 평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Simple IRA

종업원의 자발적인 각출이 허용되는데, IRA형과 401(k)형 모두 연간 \$8,000까지 자발적인 각출이 몰가에 연동하여 가능하다. 언제든지 각출을 중지할 수 있지만, 각출액은 급여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 각출금은 plan 개시 6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출금액은 근로자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용자 각출금은 역시 손금 처리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IRA형일 경우로서 종업원의 선택적 각출에 대응하여 각출(최고 급여의 3%까지)하며, 5년 중 최소 2년간은 더 낮은 대응비율인 1%까지도 가능하다(단, 401(k)형은 해당사항 없음). 이 경우에는 급여 한도액(\$200,000)은 적용되지 않으나, 401(k)형에는 적용된다. 두 번째는 IRA형으로서 401(k)형과 무관하게 모든 종업원에게 급여의 2%대응 각출이 허용되며, 급여 한도액(\$200,000)도 적용된다.

인출 급부액은 수령 연도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나, IRA형은 벌칙성 조세가 적용되며, 401(k)형에서는 10년 평균법이 적용된다. 가입후 2년 이내 조기 인출은 IRA형일 경우 “통상소득 과세 + 25% 벌칙성 조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401(k)형은 “통상소득 과세 + 10%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59.5세 이전의 조기인출은 두 유형 모두 “통상

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소득 과세 + 10% 별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라) 529 Plans (Qualified Tuition Programs)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현금으로 각출이 가능하다. 각출한도액은 주마다 다르나 통상 수익자당 \$100,000에서 \$250,000 사이에 있다. 어떤 주는 거주자에게 한도를 부여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주정부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해주는 곳도 있다. 각출금은 연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족구성원 중 동일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하면서 다른 적격 Tuition Program으로 60일 내 이관하면 비과세된다.

급부액을 2001년부터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로 사용하면 가입자의 총소득에서 배제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 외에 추가로 10%의 별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2004년 1월 이전에는 면세되었다. 수익자가 사망, 장애발생, 이관을 위한 인출, 장학금 수령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29 plans에 대한 각출은 수익자에게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각출당 사자에게 \$11,000 (기혼자 \$22,000)까지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5년에 걸쳐 각출금을 나눈다면, 매년 \$11,000에서 \$55,000까지 (기혼자: \$22,000-\$110,000)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증여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5년간에 걸쳐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기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 각출자의 상속소득에 나머지 잔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으로 각출금을 합산할 수 있다.

마) Coverdell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¹⁵⁾

연간 각출한도액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당 \$2,000 (2002년 이후 기

14)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란 수업료, 교재대, 기타 수수료, 기숙사비(교외 거주일 경우 합리적인 금액까지 인정) 등을 말한다.

15) 이전에는 “교육 IRA” 라고 불렀다.

준)이나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운용수익은 과세 이연되며, 각출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수준별 각출한도액은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에 나타난 감액구간의 각출한도액 계산공식은 $[\$2,000 - \$2,000 * \{(\text{소득} - \$190,000 (\$95,000)) / \$30,000 (\$15,000)\}]$ 과 같다. 초과각출(excess contributions)은 그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연방 소득세 신고기간(연장기간 포함)이전에 인출해야 하며, 미인출시에는 인출시까지 매년 6%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인출액이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¹⁶⁾로 사용되면 가입자의 총소득에서 배제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역시 529 plan과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부터 적용되었다. 수익자가 30세가 넘으면 생일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다. 30세 이전에 수익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대상재산에 산입시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수익자 가족 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plan으로 60일 이내에 이관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격교육비를 초과한 급부액은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며 10%의 벌칙성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비대상인 기초불입액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부과된다.

<표 III-2>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기혼 합산신고	미혼, 가구주, 기혼분리신고	각출금 한도
\$0-\$190,000	\$0-\$95,000	\$2,000
\$190,001-\$219,999	\$95,001-\$109,999	감액
\$220,000+	\$110,000+	0

16) 여기서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란 수업료, 교재대, 기타 수수료, 기숙사비(교외 거주일 경우 합리적인 금액까지 인정) 등이며, 기숙사비의 경우 6개월 이상 등록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초중등교육비(공립, 사립, 종교계 학교 불문)에도 적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바) College Tuition Deduction

연간 각출한도액은 가입자의 조정총소득, 신고 유형과 과세연도에 따라 다르다 (<표 III-3> 참조).

<표 III-3> 유형별 각출한도액

과세연도	조정총소득	각출한도액
2002-2003	단독신고자 \$65,000이하(합산신고자: \$130,000)	\$3,000
2004-2005	상동	\$4,000
2004-2005	단독신고자 \$65,000이상 \$80,000이하 (합산신고자: \$130,000 이상 \$160,000이하)	\$2,000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관련 IRA plan에는 2011년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이 적용된다. Qualified Tuition Programs의 경우 2011년 이후에는 인출액이 학생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사립학교의 교육비는 적격교육비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이관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Coverdell 교육저축계좌는 각출한도가 수익자당 \$500으로 줄어들며, 초중등학교의 교육비도 적격교육비에서 제외된다. College Tuition Deduction은 2005년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 일몰규정은 Employer-paid educational assistance plan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등에도 적용된다.

3) 準세제적격연금 plan

가) 403(b) plan

403(b) plan에서는 급여에 의한 각출금이라도 사용자 각출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403(b) plan은 Section 415의 각출한도액 적용을 받는 확정기여형 plan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출금 한도액은 2002년과 2003년 모두 급여의 100%와 \$40,000중 작은 금액이며, \$1,000단위

로 물가에 연동된다. 이 plan에서의 선택적 각출한도액은 <표 III-4>와 같다. 각출한도액은 2006년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된다.

선택적 각출금에는 현재의 사용자와 15년 이상을 같이 근무한 병원, 교육기관, 가정건강 서비스제공기관, 건강 및 후생서비스기관, 교회 또는 교회단체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도액이 있다. 특별한도액은 \$3,000, [$\$5,000 \times \text{근속년수} - 403(b), 401(k), \text{SIMPLE IRAs, 1988년 이후의 457 plan에서 납입한 각출금}, [\$15,000 - \text{이전의 선택적 각출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한다.

<표 III-4> 연도별 선택적 각출한도액

연도	50세 미만	50세 이상
2002	\$11,000	\$12,000
2003	\$12,000	\$14,000
2004	\$13,000	\$16,000
2005	\$14,000	\$18,000
2006	\$15,000	\$20,000

급부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금일 경우 특별세제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나) 457(b) Plan

선택적 각출한도액은 급여의 100%와 <표 III-4>의 금액 중 작은 것이다. 50세 이상이면 일부 금액이 추가된다.

연금급부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금일 경우에는 특별세제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급부액은 종업원이 정상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 이전, 종업원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년도,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¹⁷⁾이 발생한 연도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다. 종업원이 사망하면 급부액은 수익자에게 일시금 또는 일정기간에 걸친 연금으로 지급되나,

3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수익자의 평균여명 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익자가 배우자이면 배우자의 평균여명이 15년이 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한다.

다) 457(f) Plan

457(f) plan의 각출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급부액은 통상 소득세가 과세된다 (IRC Section 72. 연금규칙).

4) 非적격연금plan (Non-qualified Plans)

비적격이기 때문에 각출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급부단계에서는 급부액은 보험차익(=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본인부담납입보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수령예상기간을 계산한다. 둘째, 예상수령기간에 연간 연금수령액을 곱하여 예상수령총액을 산출한다. 셋째, 계약에 의해 실제 납부한 금액을 예상수령총액으로 나누어 과세제외비율을 계산한다. 넷째, 당해연도 연금에 과세제외비율을 곱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출한다. 유족연금 급부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일시금일 경우는 전액에 대하여, 확정연금의 경우는 연금연액×근속년수, 종신연금은 연금연액×평균기대여명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 공통사항

1)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급부액은 수령연도에 원천징수하고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제대상이 아닌 각출금으로 적절한 기초불입액(Basis)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대상이었던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되는데, 그 절차

17) 화재, 폭풍 등의 재난손실, 사고발생 또는 질병 등과 같은 심각한 생계곤란, 기타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등을 말한다.

는 非적격연금 plan에서 살펴본 절차와 동일하다. 단, 예상수령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연금전액에 과세된다.

연금을 금융자산으로 수령하면 과세표준금액을 인출시점의 공정시장 가격 (fair market value)으로 환산하여 과세된다. 유의할 것은 투자손실에 대한 (조세환급)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다만, 세후소득으로 각출금을 불입하고 각출금으로 적립된 기초불입액을 결코 인출한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최초 인출시 IRA의 기초불입액이 공정시장가격(1개 이상의 IRA이면 결합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그 손실을 ‘기타특별공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로 처리할 수 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계적격연금 plan에서 일시금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전액과세 대상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줄이려면 10년 평균법(ten-year averaging)과 자본이익 우대법(capital gain treatment)을 사용하는 것인데 자격자가 제한되어 있다. 10년 평균법의 자격자는 1936년 이전 출생자로서 1986년 이후에 한번도 10년 평균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적어도 5년 동안 퇴직연금 plan에 가입하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10년 평균법은 일생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 자본차익우대방법의 자격자는 1936년 이전 출생자로서 1974년 이전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한 자이다.

10년 평균법에 의한 세액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연금급부액 중에서 과세가능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가능금액이란 세후각출금을 제외한 총급부액을 말한다. 2단계는 최저급부공제액 (minimum distribution allowance: 이하 MDA)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급부수령액이 \$70,000 이하이면 과세대상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MDA를 구한다. MDA는 $[\$10,000 - (\text{과세대상총액} - \$20,000) \times 0.2]$ 와 $[\text{과세대상총액} \times 1/2 - (\text{과세대상총액} - \$20,000) \times 0.2]$ 중 작은 금액이다. 3단계는 과세대상총액에서 MDA를 차감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3

3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단계에서 산출된 금액을 10으로 나누고 이 금액에 1986년 세법의 세율을 적용한다.¹⁸⁾ 5단계는 4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에 다시 10을 곱하여 최종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로서 마지막 절차이다. 과세대상총액이 \$20,000을 상회하면 최저급부공제액은 점차 감소되며, \$70,000 이상이면 최저급부공제액은 “0” 이 된다.

자본차익우대방법은 연금 급부액의 일부를 자본차익으로 간주하여 단일세율인 2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금관리자가 계산해준다.

3) 조기인출

세제적격연금, 403(b) plan, Simple Plans, 모든 IRA plan들의 급부액을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칙성 조세가 통상소득세 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에는 60일 이내 이관 및 plan간 직접이관, 장애, 사망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사용하거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유¹⁹⁾에 따를 때, 실업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IRA로부터 조기 인출하여 지불할 때, IRA plan에서 인출하였더라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에 대한 적격교육비로 사용할 경우와 최초로 주택을 구입(최근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할 때에는 벌칙성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생동안 1회만 허용되며 \$10,000까지만 벌칙성 조세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주택명의를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도 가능하다. 또한 모든 세제적격연금 plan, SIMPLE, 403(b) TDA plan, IRA 가입자들이 균등정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IRC Sec. 72(t)(2)(A)(iv))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균등정기금이란 가입자의 일생 또는 가입자와 수익자의 연생동안 1년에 1회 등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지급기간이 5년

18) 금액이 \$0에서 \$85,790 초과까지 15단계의 세율(최저 11%에서 50%까지)이 있다.

19) 적격가족관계(Qualified Domestic Relation Order)란 이혼 등을 말한다.

이내로 조정되면, 59.5세 이후라도 10%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다만, Simple IRA는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한 시기가 가입 후 2년 이내이면 25%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2년이 지나면, 59.5세 이전 인출이라도 10%의 벌칙성 조세(penalty tax)가 부과된다.

4) 사망

세제적격연금 plan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급부액은 연방상속세 과세대상이다.²⁰⁾ 사망연금 수령자는 상속세 공제 후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액은 급부액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세율은 1986년 미혼 적용세율이다. 1936년 이전 출생자이면 10년 평균법(10-year averaging)을 적용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보다 납부세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상속대상 연금은 59.5세 이하라도 벌칙성 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5) 원천징수제도

미국세법은 1993년 연금급부액에 대해서 2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원천징수제도 역시 예외가 있는데, 첫째 연금 plan 간 직접이관, 둘째 세후각출금으로부터 연금수령, 셋째 연금급부액을 10년 이상 균등정기금으로 수령할 경우, 넷째 \$200 이하의 소액 연금 등이다. 단, 59.5세 이전 인출이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추가로 벌칙성 조세인 10%가 부과된다.

6) 최저지급요건금액

미국세법에서는 전통적인 IRA상품(Roth IRA 제외)들과 세제적격퇴직연금 plan²¹⁾의 기금을 과세 이연된 상태로 지속되지 않도록 필수지

20) 상속세는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1) TSA(Tax-Sheltered Annuity) 403(b), Keoghs plan, 401(k), SIM

3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급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적립금이 상속재산으로 전용되어 진정한 의미의 노후소득보장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4> 단일생명표(Uniform Lifetime Table)²²⁾

연령	제수	연령	제수	연령	제수
70	27.4	86	14.1	102	5.5
71	26.5	87	13.4	103	5.2
71	25.6	88	12.7	104	4.9
73	24.7	89	12.0	105	4.5
74	23.8	90	11.4	106	4.2
75	22.9	91	10.8	107	3.9
76	22.0	92	10.2	108	3.7
77	21.2	93	9.6	109	3.4
78	20.3	94	9.1	110	3.1
79	19.5	95	8.6	111	2.9
80	18.7	96	8.1	112	2.6
81	17.9	97	7.6	113	2.4
82	17.1	98	7.1	114	2.1
83	16.3	99	6.7	115	1.9
84	15.5	100	6.3	이상	
85	14.8	101	5.9		

전통적인 IRA 상품일 경우, 70.5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익년 4월 1일부터, 세제적격퇴직연금은 70.5세에 도달하는 연도와 퇴직하는 연도 중 늦은 연도의 익년 4월 1일부터이다. 세제적격퇴직연금의 경우, 5% 이상의 주식보유자는 반드시 70.5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익년 4월 1일에 연금급부를 수령해야 한다. 퇴직연금plan 가입자가 충분한 연금액을 수령하지 않거나 전혀 수령하지 않으면 최저지급요건금액과 실제수령금액의 차액에 대해 50%의 벌칙성 조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PLE, SIMPLE 401(k)과 profit-sharing plan 등을 말한다.

22) 복합생명표(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는 Slesnick and Suttle (2003), Appendix <Table II> 참조하기 바란다.

만약에 한 개 이상의 IRA이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IRA상품이면, 각 IRA별로 계산되어야 하며, IRA와 사용자가 제공하는 세제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세제적격퇴직연금이 두개 이상 있을 경우, 각각의 연금에 대해 별도로 최저지급요건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지급요건금액은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표에 제시된 除數(divisor)로 적립금액을 나누어서 계산된다. 배우자와 가입자의 나이차이가 10년 이내이면 단일생명표(Uniform Lifetime Table), 10년 이상이면 복합생명표(Joint and Last Survivor Table: IRS Reg. 1.401(a)(9)-9, Q&A3 참조)을 이용해야 한다. 단일생명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의 계산 금액이 동일하나, 복합생명표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의 결혼여부판정은 역년(calendar year)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생계곤란 인출시 과세

미국의 연금 plan에서는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와 연금 plan에서 모두 허용해주어야 가능하다. 생계곤란이란 즉각적이고 중대한 재정상의 어려움 (immediate and heavy financial need)을 말하며, 내국세청(IRS)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주택저당채권을 이용하지 않는 주택구입, 12개월 이상의 2차 교육기관 (post-secondary) 교육비, 주택에서 퇴거 또는 저당을 막기 위한 비용”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인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인출할 때 연령이 59.5세 이하이면, 10%의 벌칙성 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참고로 생계곤란으로 인출한 금액은 이관(rollover)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세제적격연금 plan에서 대출시 과세

미국의 세제적격연금 plan(주로 401(k) plan)들은 가입자에게 적립된 기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대출가능금액은 가입

4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자에게 수급권이 보장된 급부액 50%와 \$50,000 중 작은 금액이다. 다만, 이전 12개월 동안 미청산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며, 대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방법은 적어도 분기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혼가입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간을 재협상할 경우에는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대출이자수준은 통상 (우대금리+1~2%)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에 중도에 직장을 떠날 경우, 미상환원리금은 당해연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시기가 55세 또는 59.5세 이전이면 10%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2. 영국

영국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적 국민보험인 공적연금, 공적연금에의 적용제외 또는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직역연금제도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 공통의 정액급부인 기초연금 (Basic State Pension)과 피용자를 대상으로 불입액과 각출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소득비례 부가연금 (State Second Pension or 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SERPS)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사적연금은 기업이 주도하는 직역연금과 개인이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연금제도의 특징은 공적연금 중 소득비례 부가연금부분의 역할을 사적연금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가 채택되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직역연금 (Occupational Pension Scheme)으로 부르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민간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의 종업원 등이다.

가. 퇴직연금의 유형

본 연구는 퇴직연금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금체계 중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영국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운용되고 있다.

첫째는 확정급여형연금은 급여관련방식 (Salary-related Schemes)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시 급부산정기준에 따라 최종급여방식과 평균급여방식으로 구분된다.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퇴직시점의 급여, 퇴직 직전 1년간의 평균급여, 또는 퇴직 전 3~5년과 같은 특정기간내의 최상위 급여 등이 있는데 최종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²³⁾ 최종급여방식의 급부액은 근속년수, 최종소득과 동 제도에서 사용되는 급부발생율 (benefit accrual rate)에 의해 결정된다.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각출금은 가입자가 납입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가 이직을 할 경우에는 최종급여방식으로 정산하여 연금을 거치하거나 다른 연금 제도로 동일금액 상당액을 이체할 수 있다.

둘째는 확정기여형 연금은 Money Purchase Schemes로 불린다. 가입자는 자신과 회사의 납입액이 저축된 개별 연금계좌를 소유하게 되며, 급부액은 각출금과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다. 급부액 수준은 납입액 규모, 납입액의 투자성과, 퇴직시 펀드와 연금의 교환비율 (Annuity rate)에 의해서 결정된다.

셋째, 혼합형 (hybrid schemes) 연금으로서 급여관련방식과 Money Purchase Schemes의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한 상품이다.

영국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사용자들이 퇴직연금에 연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 임의각출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

23) 세계적격퇴직연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최종급여 (final earnings)는 기본 급여와 다른 과세대상급여,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 (overtime), 상여금, 수수료, 다른 현물급여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4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이하 AVC)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퇴직연금방식이 최종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이나 Money Purchase Schemes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AVC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AVC 이외에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독립 AVC(Free-standing AVC: 이하 FAVC)로 알려진 개인별 AVC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근로자는 AVC가 자신 급여의 1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와 회사의 각출금 총액은 연금급부액이 최종급여의 2/3가 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어떤 연금제도라도 종업원이 각출금을 납입할 수 있는 각출형 상품과 사용자만이 각출금을 지출하는 비각출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출형 상품에서 최소적립요구액(minimum funding requirement: MFR)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각출이 허용된다면 기금이 흑자일 경우, 종업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각출을 하지 않는 비각출형상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나. 퇴직연금 각출단계의 관련 세제

영국의 사적연금관련 과세체계는 인출시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과세하는 전형적인 순수 EET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²⁴⁾ 만약에 퇴직연금이 국세청에 의해 세제적격으로 인정받으면, 본인부담 각출금은 소득공제, 사업주부담은 비과세로 損金 처리되고, 연금적립금에 의한 투자수익에

24) Antolin et al, (2004, OECD)은 순수 EET 성격의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2개국으로 분류되며, 같은 EET 체계이지만 전술한 순수 EET국가들보다 세율에서 훨씬 관대하거나 또는 각출금에 대해 전액소득공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10개국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대한 비과세, 퇴직시 연금급부의 일부를 비과세일시금(tax-free lump sum)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영국의 퇴직연금은 제도 개선 연도별로 크게 4개, 즉 1970년 이전 체제, 1970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 등으로 분류된다.

현행 체계인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각출금은 세제적격 퇴직연금일 경우에는 소득(해당 과세연도에 조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연간 단위의 금액을 의미)의 15%까지 가능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전액 소득 공제된다. 1989년 이후 적격퇴직연금에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上限所得(earnings cap)을 도입하였는데, 소매물가지수에 의해 매년 상향조정된다. 상한소득은 2002-2003과세 년도의 경우 £97,200이며 2001-2002과세 년도에서는 £95,400이었다.²⁵⁾ 다만, 소매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보다는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1989-90과세 년도부터 2004-2005과세 년도까지의 상한소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과세년도	금액	과세년도	금액
1989-90	£ 60,000	1990-91	£ 64,800
1991-92	£ 71,400	1992-93	£ 75,000
1993-94	£ 75,000	1994-95	£ 76,800
1995-96	£ 78,600	1996-97	£ 82,200
1997-98	£ 84,000	1998-99	£ 87,600
1999-00	£ 90,600	2000-01	£ 91,800
2001-02	£ 95,400	2002-03	£ 97,200
2003-04	£ 99,000	2004-05	£ 102,000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각출한 경우, 소득세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납입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²⁶⁾ 사업주 각출금은 전

25) 과세 년도는 매년 4월6일에서 익년도 4월 5일까지를 말한다.

26) AVC를 사업주가 추가로 납입해줄 경우 정규납입보험료와 AVC의 합계액이 근로자 급여의 15%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합산 연금보험료가 연금

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액 손금 산입되며 상한은 없지만, 과잉적립(over-funding)에는 제약(restrictions)이 있다.²⁷⁾

1970년 이전 세제 체계는 사업주 각출금은 면세되지만 한도가 없고, 근로자의 각출금은 급여의 15%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 퇴직연금 급부단계 세제²⁸⁾

영국의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50세에서 75세 사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영국의 연금 급부에 있어서의 특징은 급부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급부최고액(maximum allowable pension 또는 total benefits)은 세법에 의해 20년 근속의 경우 비과세일시금(tax-free lump sum)을 포함하여 소득상한선까지는 최종급여의 2/3

급부액이 세법상 규정된 최고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AVC를 1987년 4월 7일 이후부터 처음으로 납입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재원으로는 추가연금 급부나 사망급부액을 구입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AVC로 인한 적립금은 퇴직시에 비과세 일시금을 증액해서 살 수 없다. 기타 AVC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ersonal Taxpayer Series IR2: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 guide for Members of tax approved schemes, Inland Revenue, 2003. 2. pp. 11-14 참조 (www.inlandrevenue.gov.uk)

27) 한편, 1989년 소득상한선(earnings cap)이 도입된 뒤에 두 가지 비직격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직격연금에 비해 작다. 고용주각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에 상한 없이 포함된다. 근로자각출금은 제한이 없지만 조세혜택이 없다. 급부액에 제한이 없고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소득 또는 비과세일시금 또는 연금소득으로 각각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비직격연금제도는 기금형(funded unapproved retirement benefit schemes: FURBS)과 비기금형(unfunded unapproved retirement benefit schemes: UURBS)이 있다. 기금형은 근무기간동안 각출금이 있지만, 비기금형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비기금형은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8) 일부 내용은 손성동·김상의(2001)에서 인용하였다.

로 제한된다.²⁹⁾ 퇴직시에 받게 되는 비과세 일시금(tax-free lump sum)은 근속년수 40년의 매년에 대하여 최종상한소득 (capped final remuneration)의 3/80 또는 최초연금액(연 기준)의 2.25배로 제한되어 있다.

1970년 이후 세제 체계에서는 10년 근속 후에 최종급여(상한이 없음)의 2/3까지 연금급부액이 지급되지만, 비과세일시금의 경우 20년 근속이상인 경우 최종급여(상한 없음)의 1.5배까지로 제한된다.

가장 짧은 기간 운영되었던 1987년 체제는 20년 이상 근속 후에 상한이 없는 최종급여의 2/3까지 연금급부액이 지급되며, 비과세 일시금은 £150,000을 한도로 공식에 의해 제한된다.

1) 확정급여형 연금

이제 확정급여형 연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연금급부액은 전액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데, 2004-2005과세 년도 기준으로 기본세율 납세자 (a basic tax rate taxpayer)에게는 22%의 세율로 과세되며,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세표준액)이 £31,400(2003-04과세 년도의 경우 £30,500)이 넘을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전환되지 않은 일시금(lump sum)은 추가소득(extra income)으로 과세대상이다.³⁰⁾ 일시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가입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을 자본 및 이자로써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연금소득의 일부는 국제

29) 퇴직연금최고액 (maximum allowable pension)은 퇴직연금유형과 무관하게 세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산출되며 매년 의회에서 조정발표하고 있다.

30) 전환(commutation)이란 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연금급부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퇴직연금들이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교환비율은 연금 £1당 얼마만큼의 일시금과 교환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전환승수(commutation factor)라고 한다.

4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청에서 연금적립금에 의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이자로 간주하여 20%의 이자소득세율(savings rate)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감소된다. 이는 연금수급자의 세금부담을 줄여 퇴직이후 시기에 더 많은 소득을 주기 위함이다. 일시금으로 생존연금(life annuities)을 구입하는 것도 동일하게 일부는 자본수익(capital return)으로 비과세, 그 차액(balance)은 2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일시금으로 급부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하여 논의한다. 퇴직연금가입자는 근로자이거나 퇴직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각출을 하고 급부를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987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통상 퇴직연령까지의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종소득이 2/3를 초과하지 않고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최종소득에 대한 지급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은 1/60이며, 2년 2/60, 3년 3/60, 4년 4/60, 5년 5/60, 6년 8/60, 7년 16/60, 8년 24/60, 9년 32/60, 10년 이상 40/60 (2/3)를 각각 적용받는다.

둘째,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가입한 경우 통상 퇴직연령까지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연금액은 최종소득의 2/3를 초과하지 않고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인 경우 연금액의 최종소득에 대한 비율은 하락한다. 근속년수가 4년인 경우 최종소득에 대한 지급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은 8/60, 6년 12/60, 8년 16/60, 10년 20/60, 12년 24/60, 14년 28/60, 16년 32/60, 18년 36/60, 20년 이상 40/60(2/3)을 각각 적용받는다.

셋째, 1989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가입한 경우에 추가하여 최종소득의 상한 (2003년 4월 5일 끝난 과세연도에는 97,200 파운드)이 적용된다.

비과세 일시금 최고액은 제도개선시기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의 경우 1970년 이후 체계에서는 최종급여의 1.5배, 1989년 체계

에서는 최초연금 급부액의 2.25배 또는 최종급여 (상한선 있음)의 3/80이다. 20년 이하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및 비과세 일시금 최고액은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다만, 1970년 이전 세제 체계는 연금급부액 중 일부를 비과세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의 비과세 한도 내의 최종소득에 대한 비율은 줄어든다. 근속년수가 1~8년인 경우, 최종소득에 대한 지급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 (accrual rate)은 3/80이며, 9년 30/80, 10년 36/80, 11년 42/80, 12년 48/80, 13년 54/80, 14년 63/80, 15년 72/80, 16년 81/80, 17년 90/80, 18년 99/80, 19년 108/80,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 120/80, 즉 1.5배를 적용받는다. 1987년에서 1989년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하의 산식에 의해 비과세한도액이 산정된다 (손성동·김상의, 2001 참조). 다만, 최종소득의 상한은 10만 파운드이며, 일시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15만 파운드이다.

$$\text{비과세한도액} = \{(A - B)/(C - B) \times (D - E)\} + E$$

단, A: 연금급부액,

B: 기본연금액=최종소득액×근속년수/60,

C: 최고연금액=최종소득액×근속년수/30,

D: 비과세한도액=최종소득액×일시금지급비율,

E: 비과세기본액=최종소득액×근속년수×3/80.

1989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이 비과세한도액이 된다.

A: 최종소득액×근속년수(40년을 한도)×급부발생율(3/80)³¹⁾

B: 연금급부액³²⁾×2.25

31) 이 산식은 연금급부와 일시금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32) 여기서의 연금급부액은 비과세일시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가입자가 받는 초회 연간 연금급부액을 말한다.

비과세 일시금에 관한 중요한 점은 연간 단위로 연금급부액이 £260을 초과하지 않으면, AVC 또는 FAVC를 포함한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이 경우에도 전환된 소액연금은 과세대상이 되므로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한다.

2) 확정기여형 연금

확정기여형의 세제혜택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나. 급부수준은 최종급여가 아니라 각출금 수준, 납입적립금의 투자수익, 퇴직시 펀드와 연금의 교환비율(annuity rate)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법은 2001년 과세연도부터 확정기여형 연금 구입 시기를 50세(적용제외형인 경우 60세)에서 75세까지 이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에서도 확정급여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에 직장을 변경했을 경우, 세법상 선택할 수 있는 연금급부 산정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 직장의 퇴직연금으로부터 받을 연금급부액이 최종급여의 1/60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연금급부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받을 연금액에 적용될 세법상한액을 계산할 때 전 직장에서 받을 연금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은 전 직장의 연금액이 큰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는 현 직장의 퇴직연금으로부터 받을 연금급부액이 최종급여의 1/60보다 더 빠르게 적립되는 경우라면, 현 직장의 연금액에 전 직장에서 받을 연금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한다. 총연금액이 최종급여의 2/3인 연금급부최고액을 초과하면, 현 직장의 연금급부액이 다음의 두 조건-급여가 소득상한선의 1/4보다 작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전 직장에서 받는 총연금액이 최종급여의 1/60보다 작거나 같지 않을 때-이 충족되지 않으면 급부액을 삭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전 직장에서

33) 이를 소액연금전환이라고 부른다.

소액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 유용하다.

지금까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별로 급부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연금급부액은 전액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일단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연금액한도까지 매년 증액되어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증액은 3%와 소매물가지수로 측정된 생활비 증가 중 더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유족연금에도 적용된다.

라. 퇴직시기별 급부액

영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기에 따라 급부액이 달라지고 급부액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 역시 달라진다. 먼저 지연퇴직(late retirement)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1989년 이후 가입자들은 실제퇴직일 또는 75세가 넘어야 연금급부액을 수령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가입자가 아닐 경우, 정상퇴직일에 연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일단 퇴직으로 간주되어 퇴직일 이후 계속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연금급부액이 증액되지 않는다.

정상퇴직일에 급부액을 전혀 찾지 않은 채 정상퇴직일 이후에 퇴직하면 실제퇴직일을 정상퇴직일로 간주하여 이후의 급부액은 증액된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첫째, 40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정상퇴직일 이후 근무를 계속할 경우 추가 1년마다 1/60을 부가하여 최고 5/60까지 부가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매년 3/80씩 추가되어 최고 15/80까지 증액된다. 둘째, 정상퇴직일의 연금액은 소매물가지수만큼 증액된다. 셋째, 정상퇴직일의 연금액이 연금수리적으로 증액되는데, 이는 연금기금의 투자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퇴직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이연시킬 수 있다. 또한 가입한 퇴직연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수령할 수도 있다. 조기

5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퇴직시의 최고급부액은 1989년 이후에 가입한 것인지 이전에 가입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1989년 이후 가입자이면, 실제 퇴직일이 정상퇴직일로 간주되어 연금급부공식에 따라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1989년 이전 가입자이면, 근속년수에 1/60을 곱하는 공식으로 연금급부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기퇴직은 비례적으로 급부액이 감소되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공식으로 계산된다.

$$N \times P / NS$$

단, N: 실제근속년수, P: 퇴직시 최종급여에 기초하여 정상퇴직일에 받을 수 있을 연금액, NS: 정상퇴직까지의 총기간.

마찬가지 논리로 일시금도 근속년수에 따른 3/80법칙에 따라 계산되며, $(N \times LS) / NS$ (단, LS: 정상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 공식에 따른다. 만일 1987년 이후 가입자라면 N / NS 공식이 적용된다. 주의할 것은 확정기여형 연금이라면 조기 퇴직시에도 국세청의 최대 허용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즉시 일시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해사유로 인해 조기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은 비과세이나 잔액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연금(immediate pension)으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전에 아예 연금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급부최대액은 조기 퇴직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계산되지만, 기준금액은 연금 탈퇴시 최종급여이다. 계산공식은 N / NS 이다. 이 공식은 연금 가입형태와 무관하다. 만약에 50세 이후에 탈퇴하였다면 연금급부액은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즉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매물가지수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급부액의 실질가치 감소분이 보전된다. 1989년 이후 가입자일 경우에는 세법상 50

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언제든지 연금급부액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일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지급되므로 국세청에서 허용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연금급부로 받을 수 있다.

마. 기타 특수한 경우

사망연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살펴본다. 이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간에 차이가 없다.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의 연금(Death in service benefits)은 정상퇴직일이전에 사망할 경우이고, 퇴직 후 사망연금(Death in retirement)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시기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무 중 사망연금”에는 최종급여의 4배까지인 일시금과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장해로 인한 수령금액의 2/3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만약에 한 사람 이상의 유족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어느 금액도 장해연금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후 사망연금’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면, 나머지 보증기간동안 연금이 배우자나 부양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영국의 연금제도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정기지급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기간이 5년 이내이면, 사망일 이후에 발생할 연금지급액을 모두 합산하여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탈퇴하게 되면 연금종류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연금은 관련법에 의해 해당 연금 상품이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연금급부에 양도(roll over)된 경우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환급이 허용되는 퇴직연금일 경우 환급액의 20%를 특별(소득)세율(special tax rate)로 부과하여 공제한 후에 그 잔액을 환급해준다. 또한 AVC로 인해 발생한 세제적격퇴직연금 급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또는 당해 연금을 양도할 때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액 역시 과세대상이다. AVC로 인한 환급잉여액에 대한 과세는 특별세

5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율로서 기본세율인 22%보다 10%가 더 높아 환급총액에 대해 32%를 부과한다. 이는 각출금에 대해 주어진 세제혜택과 비과세 적립금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사업주들이 퇴직연금을 위한 적립금과 관련된 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영국은 세법상 연금적립금을 필요 이상(5%이상)으로 보유하면 잉여금(pension scheme surplus)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되거나 세제적격연금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³⁴⁾

잉여금 감액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신규 또는 증액된 급부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둘째 사업주의 각출요율을 최고 5년까지 인하시키거나, 셋째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각출요율을 최고 5년까지 인하시키는 것 등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잉여금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일정한 세율(40%)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각출을 중단(contribution holiday)하는 방법도 있다.

3. 일본³⁵⁾

가. 일본의 연금구조

일본의 연금체계는 3층 연금제도이지만, 개인연금을 포함하면 ‘4층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다 (김화동, 2002, p. 3). 즉,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인 기초연금 (1층), 재직 중의 임금과 가입기간에 비례한 보수 비례연금인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2층), 사적연금인 퇴직연금(3층), 그리고 개인연금 (4층)등이 있다. 민간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보험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연금은 그 안에 1층

34) 영국 역시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요건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양성문(1998)과 손성동·김성의(2001), 전영준(2001)을 참고할 것.

35) 이하의 내용은 김화동(2002), 손성동·김상의 (2001)을 주로 참고하였다.

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가입자의 피부양배우자(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류는 자영업자와 학생 등(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다. 자영업자와 학생들은 기초연금(노령기초연금) 이외에는 가입할 수 없어, 이들이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가입한 민간기업 종업원 및 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1년 국민연금기금을 도입하였다.

한편, 앞서 설명한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은 민간기업의 종업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생연금에 부가하는 연금인데 세제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퇴직급여충당금제도 등이 있다.³⁶⁾ 여기서는 후생연금기금과 세제적격퇴직연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후생연금기금은 노령후생연금의 일부(후생연금의 ‘대행부분’이라고 함)를 국가를 대신하여

36) 중소기업퇴직금 공제제도는 중소기업 퇴직금공제법에 의거, 중소기업자의 상호공제와 국가의 지원으로 퇴직금제도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1959년 설립된 것이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직금규정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그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금경리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적립금의 계산기준은 퇴직시의 지급액이 된다. 일정비율까지는 비과세로 계상가능하나 비과세비율이 1998년 4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01년도 27%, 2002년 23%, 2003년 이후는 20%로 된다. 자금은 기업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주민세, 사업세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02년 개정 법인세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경과조치로 폐지전인 2002년 3월말 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은 10년간)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각년도에 세부담이 발생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화동(2002, p. 32)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급하고 여기에 기업의 자체 연금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대행부분 때문에 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와 종업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후생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면제된다. 사실 후생연금기금은 기업이 설립한 특별공법인이다. 이는 설립형태에 따라 1개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복수의 기업이 설립하는 것, 업계단체 등을 조직모체로 하여 다수기업이 모여서 설립하는 경우 등이 있다.

후생연금기금은 적격퇴직연금과 같이 퇴직시 일시금 또는 5년이나 10년 정도의 기한부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중신형연금으로 지급된다. 후생연금기금은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일정범위 내에서 연금지불을 보증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지불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지불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에도 직역상당부분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제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규정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주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 등의 수탁회사와 연금신탁 및 연금보험계약 또는 연금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금제도를 말한다 (김화동, 2002, p. 25).³⁷⁾ 이는 1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이 부담한 부금은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사전적립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통상부금(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급부에 충당하기 위한 부금)의 50%가 한도이다. 종업원이 부담한 부금은 생명보험료 공제대상이다. 이 연금은 주로 중소기업 중심적으로 보급되어 왔고 장래 급부를 위해 예정하고 있던 이윤보다 밀돌 경우 기업은 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상품으로서의 연금에 각자가 자유의사로 가입하는 것으로

37) 일본의 세제적격퇴직연금의 요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양성문(1998), 김화동(2002)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생명보험, 우체국, 전국노동자 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보험형과 신탁은행, 증권회사 등의 저축형이 이에 해당된다.

나. 퇴직연금 유형별 세제

지금까지 일본 연금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해보았다. 일본의 퇴직연금관련 체계는 2001년 10월, 2002년 4월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확정급여연금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법으로 인해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으로 대표되던 퇴직연금 구조는 큰 변화가 있었다. 38)39) 따라서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부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애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다. 노령급부금은 가입자들의 노령을 사유로 지급하는 급부로서 지급개시연령은 최소한 5년에 걸쳐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60~65세 사이에서 연금규약으로 정해진다. 단, 퇴직을 요건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급부의 수급자격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급부대신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퇴일시금은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연금급부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장애급부·유족급부는 가입자가 고도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는 각기 장애급부 또는 유족급부를 연금 또는 일시금

38) 적격퇴직연금제도는 2001-2002년도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서 폐지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세제우대조치가 허용된다. 결국 확정급여형 연금이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제도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39) 참고로 적격퇴직연금은 퇴직시 일시금 또는 5년이나 10년 정도의 기한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후생연금기금(확정급여형)은 종신연금으로 지급된다.

5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제 체계는 각출 및 운용단계와 관련된 세제 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뒤, 급부단계의 세제를 논의한다. 사업주 각출금은 전액 손금 계상되며, 본인각출은 생명보험료 공제대상이 된다. 운용 시에는 부금적립금에 대하여 특별법인세가 부과되나 2003년까지는 과세가 정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특별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부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과세된다. 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이 되는 퇴직소득금액은 그 해에 받은 퇴직수당 등의 수입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공제한 잔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엔×근속년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만일 이 금액이 80만엔 이하이면 80만엔으로 처리한다. 근속년수가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만엔+70만엔×(근속년수-20년)과 같이 계산된다(법 제30조와 기타 특칙 참고).⁴⁰⁾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이는 퇴직소득에 대한 간이세율표(Simplified Tax table on Retirement Income)에 의하여 결정된다.⁴¹⁾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상 雜所得에 해당되어(소득세법 제35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잡소득금액은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⁴²⁾ 공적연금 등의

40)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사립학교 교직원공제법 및 독립행정법인 농업자 연금기금법, 후생연금 보험업법, 석탄광업연금기금법, 확정급여 퇴직연금법 (단,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등에 의한 일시금은 퇴직수당으로 간주한다.

41)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손성동·김상의 (2001), pp. 103-105, p. 110을 참고하기 바란다.

42)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에 대해서는 김화동 (2002), p. 157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제액은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 III-6>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

연령	당해연도의 공적연금 등 수입금액 합계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
65세 미만	130만엔 이하	70만엔
	1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	수입금액×25%+37.5만엔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	수입금액×15%+78.5만엔
	770만엔 초과	수입금액×5%+155.5만엔
65세 이상	260만엔 이하	140만엔
	260만엔 초과 460만엔 이하	수입금액×25%+75만엔
	460만엔 초과 820만엔 이하	수입금액×15%+121만엔
	820만엔 초과	수입금액×5%+203만엔

주: 김화동, 2002, p. 157에서 재인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본판 401k인 확정기여형의 급부 역시 노령급부금, 장애급부금 및 사망일시금의 세 종류가 있다. 또한 특수한 급부로서 탈퇴일시금이 있는데, 탈퇴 후 다시 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태이면서 각출연수가 3년 이하일 때에 수령이 가능한데 개인형과 기업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III-7>이다.

노령급부금은 지급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60세에 도달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고(사실상 60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늦어도 70세에는 급부를 개시해야 한다. 가입자기간⁴³⁾이 10년 이상이면

43) 가입자기간이란 기업형(개인형 포함)의 가입자기간과 기업형(개인형 포함)연금의 운용지시자(의미: 가입자자격을 상실하고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하고 있는 자)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기업의 퇴직금제도나 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제도로부터 자산을 이관한 기업형 연금에서는 그 대상이 된 과거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다만, 60세가 되면 부급불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기간이 부족한 가입자를 위해 경과조치로서 가입자기간을 다음과 같이 다축하고 있다. 노령급부금의 가입자기간이

5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형태는 연금(5~20년 유기연금 수령이 원칙) 또는 일시금(연금규약에 정해져 있을 경우)인데 연금은 공적연금 등의 공제를 하며, 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에 해당된다. 계산방법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다.

<표 III-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부종류

구분	지급사유	지급형태	세제취급
노령급부금	60세 도달시(늦어도 70세에는 수급개시)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은 공적연금 등 공제, 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
장해급부금	가입자가 일정한 장애상태로 된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비과세
사망일시금	가입자의 사망	일시금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탈퇴일시금	가입기간이 3년 이하로서 계속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시금	소득세, 개인주민세 과세

주: 김화동(2002), p. 148 <표 4-4>에서 재인용

장해급부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장애상태로 된 경우이고 지급형태 역시 노령급부금과 마찬가지로 연금(5~20년 유기연금) 또는 일시금(규약에 있을 경우에 한함)이며, 비과세 대상이다. 장해급부금의 수급권자는 노령급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노령급부금을 수령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할 경우 적립금이 남아있으면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법정 상속인수×500만엔까지 비과세)된다. 사망일시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유족은 배우자, 사망한 자가 사망한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자,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상기 이외의 친족, 사망한 자가 사망한 당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었던 자,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수령하고 수급권자가 둘 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연령은 60~70세, 8~10년이면 61~70세, 6~8년이면 62~70세, 4~6년이면 63~70세, 2~4년이면 64~70세, 1월~2년 미만이면 65~70세이다.

상이면 균등 분배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입자를 지정하였으면 그에 따른다.

탈퇴일시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구조건은 가입자기간이 3년 이하일 것과 가입자 자격이 없는 때로부터 2년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판 401k,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우대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401k도 기존 세제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출단계, 적립금운용단계, 급부단계 등 3단계에서 우대조치를 받는다. 부금각출단계에서는 기업형 연금에서는 회사 등이 가입자를 위해 각출하는 부금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라서 절세가 가능), 기업의 각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개인형 연금일 경우는 가입자가 각출한 부금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하게 되어 있다.

소득공제대상 각출한도액은 자영업자가 개인형 연금에 가입할 경우가 가장 높다. 국민연금기금의 부금과 합쳐서 연간 81만 6,000엔(월 6,8000엔)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근무처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회사원이 기업형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간 432,000엔(월 36,000엔)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는 근무처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원이 기업형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간 216,000엔(월18,000엔)이다. 넷째, 각출한도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근무처가 확정기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어느 것도 도입하고 있지 않아 개인형 연금에 가입하는 회사원이다. 연간 180,000엔(월15,000엔)이다.⁴⁴⁾ 참고로 알아둘 것은 확정기여형 연금은 각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금을 각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44) 이상에서 보듯이 퇴직연금제도의 유무에 따라 각출한도액에 차이를 둔 것은 다음과 같다. 후생연금기금을 가입한 기업이 지출하는 종업원의 부금은 비과세대상이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그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의 각출한도액을 높여 줌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6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점이다.

<표 III-8>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세제체계 비교

구분		각출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
공적 연금	후생연금보험(확정급여)	사업주부금: 전 액손금산입 가입자각출금: 사회보험료공제	적립금: 비과세	연금수령: 잡소득으로 과세(공적연금 공제 등)
사적 연금	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	상동	적립금: 원칙적 비과세 단, 대행부분의 2.84배에 대해 서는 특별법인 세와 주민세 과 세	연금수령: 잡소득으로 과세(공적연금 공제 등) 일시금: 퇴직소득으로 처리
	적격퇴직연금	사업주부금: 전 액손금산입 가입자각출금: 생명보험료공제 (가입자 부담이 있을 경우)	가입자부담금을 제외한 적립금 에 특별법인세, 주민세 과세	상동, 단 가입자부담 분은 제외
	일본판 401k (기업형)	사업주부금: 전 액손금산입	이자, 배당 등 운용수익은 소 득세 비과세 적립금에 대해 서는 특별법인 세, 주민소득 부과	(노령급부금의 경우) 연금수급시: 공적 연 금 등 공제 일시금: 부금불입기간 을 근속년수로 간주 퇴직소득과세
	일본판 401k (개인형)	가입자부금: 전 액소득공제	상동	상동

주: 김화동(2002), p. 158 <표 4-6>에서 재인용.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배당 등은 비과세이다. 이 수익은 급부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립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매년 4월 1일 현재의 연금자산 잔고(부금+운용손익분)에 대하여 특별법인세 1%, 법인주민세 0.173% 등을 합한 총 1.173%의 세금이 부과된다.⁴⁵⁾

한편, 퇴직연금을 제도 간에 서로 이관(roll over)해도 세제우대조치

45) 이 제도는 일본 특유의 제도인데, 적격퇴직연금에 특별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를 계속 받게 된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이관은 허용되나 반대 방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판 401k는 자영업자에서 회사원, 회사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형과 개인형은 통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 다른 특징은 70세까지 연금지급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세제상 우대되는 401k제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막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것은 대부분의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정년이 60세인 현실을 반영하여 정년 후 65세까지 소득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퇴직연금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한 세제체계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 <표 III-8>이다.

4.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체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시장 환경, 세제의 특성과 기존의 제도 등을 종합하여 세제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제도개선 연도별로 1970년 이전 체제, 1970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네 번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일본은 2001-2002년의 연금개혁을 통하여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 등의 기존 퇴직연금 구조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변경하여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와 달리 미국은 확정기여형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각 plan별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였기 때문에 시기별로 제도가 변화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6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조사대상 3개국의 퇴직급여 관련 세제체계 중 급부단계 세제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는 체계가 거의 유사하지만, 일본은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분류하고 개인연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관계없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I-9> 국가별 퇴직급여 급부단계별 세제 비교

국가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비고
한국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비례공제 -근속년수 공제	<연금소득세> -연금소득공제 -600만원/년 이상	-연간 600만원이상 수령시: 종합소득세 대상
일본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비례공제 -근속년수 공제	<잡소득세> 단,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간주	한국 체계와 유사
미국	통상소득으로 과세 (전액과세대상) -단,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우대법 해당자는 경감 가능	통상소득으로 과세 -단,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우대법 해당자는 경감 가능	일시금과 연금 과세 차이 없음
영국	근로소득으로 과세 비환일시금: 추가 소득으로 과세대상	좌동	비과세일시금과 연금 병행 수령가능.

미국은 특별히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과세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36년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세액경감이 가능한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일시금과 연금 공히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일시금의 경우 비과세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비과세 일시금에 한도액이 있다.

요약하면 미국과 영국은 사실상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소득성격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두 소득을 다른 성

격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일시금을 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미국은 일시금과 연금소득 공히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차별적으로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 우대조치는 영국과 맥을 같이 하지만 소득의 성격규정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3개국의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제시해본다. 첫째, 퇴직금제도를 가능하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면, 미국과 같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차별하지 않는 세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저율과세에 익숙해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세제차원에서 돕기 위해서는 영국 세제 체계를 과도기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실 영국은 비과세일시금과 연금으로 혼합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일시금과 연금과의 세부담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급여를 각각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세액계산방법도 달리 하고 있어 계산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국 세제와 유사한 체계를 도입·운영하고, 향후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제를 동일한 체계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세액계산절차는 연금과 일시금과 관계없이 차이가 없으나, 일시금은 연금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커서 연금보다 훨씬 불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10년 평균법(Ten-year averaging)을 적용하면 세액이 감소되지만 이

6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1936년 이전 출생자로 제한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급부액을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퇴직급여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지급된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령의 경우, 미국은 조기인출에 따른 벌칙성 조세를 59.5세(일부 plan은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60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영국은 50세에서 75세까지로 규정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인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할 것은 일본의 경우 평균 정년이 60세 전후이고 공적연금의 수급개시기간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노령급부금은 5~20년의 유기연금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규약 상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기간인 65세로 퇴직연금기간이 일본보다 5년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서는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가교연금으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소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망으로 인한 연금을 수급할 경우, 미국은 연방 상속세 부과 대상이며, 영국은 ‘퇴직후 사망’ 일 경우 지급보증기간이 5년 이내이면 사망일 이후에 발생할 연금지급액을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연금소득의 범주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까지 포함하고 있어 퇴직연금 수혜자의 사망에 따른 일시금을 퇴직금제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공적연금과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세제적격퇴직연금인 401(k) plan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중도인출과 대출을 허용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의 확정기여형인 일본 401(k)은 60세 이전에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여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조항을 규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불허)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미국과 유사하게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무주택가입자 본인의 주택구입, 가입자의 6개월 이상의 실직 등이 다. 이에 대한 과세도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IV.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1. 기본가정

가. 경제변수 추정치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의 현재가치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이자율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시 사용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5%를 사용하였다 (<표 IV-1> 참조).

<표 IV-1> 경제변수 추정치

구 분	2003	2004	2005 ~10	2011 ~20	2020 ~30	2031 ~50	2051 ~
임금인상률	9.2%	6.5%	5.5%	5.5%	5.5%	5.5%	5.5%
투자수익률	7.5%	7.5%	7.5%	7.0%	6.0%	5.5%	5.0%
물가상승률	3.0%	3.0%	3.0%	3.0%	3.0%	3.0%	3.0%

주: 2003년 임금인상률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전산업(5인 이상) 평균 임금인상률이며, 2004년 임금인상률은 상반기 인상률을 이용한 추정치임.

투자수익률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 또는 총자산수익률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다. 퇴직연금 역시 가입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국민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설정된 국민연금기금의 예상 투자수익률이 퇴직연금의 이자율 추정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만, 자본의 세계화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이 국제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임금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3%의 물가상승률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명목 임금상승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인 5.5%를 적용하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보다 다소 높게 설정된 편으로, 국내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가 국제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고되어 임금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계산의 편의상 근속연수의 증가로 인한 승진이나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에서 현행 법정퇴직금액 또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일시금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시점에 결정된 법정퇴직금액이나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정한 경제변수의 추정치들은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나. 임금액

임금은 서론에서 제시한 대로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 추정에 사용한 임금액은 통계청의 2003년 『도시가계조사』에서 발표된 도시근로자가구의 1분위에서 10분위에 속하는 가구주들의 근로소득이다 (<표 IV-2> 참조). 이는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금세제의 차이를 보기 위함이다. 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 IV-1>에 있는 예상 명목임금인상률 6.5%를 적용하여 2004년 임금으로 환산하였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분위별로 40

6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세에서 45세에 이르고 있지만, 계산의 편의상 40세로 간주하였다.

<표 IV-2>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2003년)

(단위: 원)

소득 구분	취업자수	가구 주 연 령	총수입	근로소득	가 구 주 근로소득
1분위	1.149	45.5	2,227,662	666,710	609,455
2분위	1.287	42.2	2,904,425	1,245,780	1,097,989
3분위	1.389	41.1	3,827,232	1,626,603	1,398,984
4분위	1.437	40.0	4,443,339	1,921,329	1,615,272
5분위	1.553	40.5	5,234,455	2,206,375	1,786,240
6분위	1.665	41.2	5,633,182	2,486,110	1,949,434
7분위	1.697	41.1	6,532,491	2,863,218	2,249,081
8분위	1.713	41.5	7,482,176	3,311,595	2,630,777
9분위	1.806	42.3	9,262,164	3,916,594	3,072,304
10분위	1.899	44.5	13,088,170	5,685,142	4,243,510

또 다른 유형은 가입연령, 기업규모, 그리고 재직기간에 따른 세액 차이를 보기 위하여 사용한 연령별 임금액이다. 이는 노동부 200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산업별 통계 중 대분류에 속하는 종업원 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전산업)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이다 (<표 IV-3>참조).

연령 및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27세, 35세, 40세의 총 3개 연령층으로 구분 산출하였는데, 27세는 25-29세, 35세는 35-39세, 40세는 40-44세의 월급여총액을 대표하는 연령으로 간주하였다. 연령별 임금수준은 2002년 금액이었기 때문에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표 IV-1>의 2003년 및 2004년 임금인상률(예상)인 9.2%와 6.5%로 조정하였다.

<표 IV-3> 기업규모별·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전산업)

(단위: 원)

구분		평균 연령	월급여 총액	정액급여	초과 급여	연간 특별급여	근로자수
규모	연령						
30-99인	-19	18.6	869,902	754,470	110,432	483,542	15,008
	20-24	22.3	981,205	876,684	104,340	1,173,337	156,371
	25-29	27.1	1,282,918	1,182,752	100,167	2,050,638	260,764
	30-34	31.9	1,602,767	1,476,897	125,869	3,404,942	246,346
	35-39	37.0	1,754,209	1,602,522	151,688	3,995,321	209,739
	40-44	41.9	1,755,157	1,585,370	169,787	4,397,114	206,932
	45-49	46.8	1,730,386	1,570,609	159,777	4,366,356	142,333
	50-54	51.9	1,681,938	1,521,258	160,680	4,254,530	98,817
	55-59	56.9	1,451,009	1,341,907	109,103	3,108,642	67,979
	60-	63.5	1,194,359	1,136,834	57,525	1,941,439	59,560
	전체	37.3	1,509,210	1,378,382	130,828	3,197,726	1,463,849
500인 이 상	-19	18.3	976,089	748,581	227,508	1,933,490	19,398
	20-24	22.4	1,084,109	896,396	187,713	3,759,250	89,236
	25-29	27.2	1,412,903	1,231,552	181,351	5,818,802	184,730
	30-34	31.9	1,812,824	1,575,967	236,857	8,513,499	221,004
	35-39	37.0	2,105,694	1,811,296	294,398	10,092,958	196,290
	40-44	41.9	2,215,466	1,887,026	328,440	10,647,130	161,286
	45-49	46.8	2,223,153	1,874,128	349,024	10,956,661	102,605
	50-54	51.8	2,076,030	1,732,495	343,535	9,921,626	58,313
	55-59	56.5	2,028,360	1,780,821	247,539	8,814,565	22,662
	60-	62.5	2,039,850	1,924,677	115,173	9,145,316	7,546
	전체	35.8	1,842,304	1,578,827	263,477	8,465,392	1,063,070

2. 퇴직일시금의 산출

가.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표 IV-4>는 <표 IV-2>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추정된 40세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월평균임금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2004년 현재 40세 근로자가 정년인 2019년까지 15년간 근속하고 매년 명목임금인상률이 <표 IV-1>과 같이 5.5%라고 가

7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정하면, 확정급여형에서 동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은 소득계층별로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근속연수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한편 확정급여형의 퇴직일시금은 2005년부터 매년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각출되고 <표 IV-1>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2019년까지 부리된 금액이다.

<표 IV-4>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단위: 원)

연령	소득 계층	월평균임금		근속 년수	퇴직일시금	
		2004년	2019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40	1분위	649,070	1,449,033	15	21,735,489	24,160,124
	2분위	1,169,358	2,610,565	15	39,158,473	43,526,677
	3분위	1,489,918	3,326,207	15	49,893,102	55,458,775
	4분위	1,720,265	3,840,450	15	57,606,757	64,032,902
	5분위	1,902,346	4,246,942	15	63,704,127	70,810,447
	6분위	2,076,147	4,634,950	15	69,524,248	77,279,812
	7분위	2,395,271	5,347,387	15	80,210,802	89,158,472
	8분위	2,801,778	6,254,902	15	93,823,536	104,289,734
	9분위	3,272,004	7,304,671	15	109,570,072	121,792,826
	10분위	4,519,338	10,089,316	15	151,339,743	168,221,985

나.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은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과 달리 일정 연령에 이르면 실질임금인상이 정지되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명목임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고용불안과 조기퇴직이 상시화되어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고령층에 달할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포기함으로써 고용연장을 도모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표 IV-5>를 보면 종업원수 500인 이상 대기업의 27세 근로자의 경우 15년 후인 42세까지 임금이 5.5%로 인상하나, 그 이후는 물가상승률인 3% 만큼만 인상되고, 35세는 10년 후인 45세부터, 40세 역시

10년 후인 50세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종업원수 3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7세나 35세의 경우는 대기업과 동일하지만 40세의 경우 5년 후인 45세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V-5> 연령별 임금인상률 가정

규모	연령	임금인상률				
		~5년	~10년	~15년	~20년	~28년
대기업	27	5.5%	5.5%	5.5%	3.0%	3.0%
	35	5.5%	5.5%	3.0%	3.0%	
	40	5.5%	5.5%	3.0%		
중소기업	27	5.5%	5.5%	5.5%	3.0%	3.0%
	35	5.5%	5.5%	3.0%	3.0%	
	40	5.5%	3.0%	3.0%		

<표 IV-6>는 <표 IV-3>의 기업규모별·연령별 임금구조통계를 이용하여 대기업(종업원 500인 이상)과 중소기업(근로자 30 이상 100인 미만)의 특정연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추정한 것이다.

2004년 현재 각 연령별 근로자들이 정년인 55세까지 근속하고 매년도의 임금인상률이 <표 IV-5>와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퇴직당시 동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근속연수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각출된 월평균임금이 <표 IV-1>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정년 때까지 부리된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일정 연령에서 둔화 내지 정지 되는 경우(예: 임금피크제)에는 매년 월평균임금이 각출되어 투자수익률로 부리되는 확정급여형의 퇴직일시금액이 확정기여형보다 많게 산출되었다.¹⁾

<표 IV-6>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

(단위 : 원)

규모	연령	월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2004년	2019년 40세 정년	2024년 35세 정년	2032년 27세 정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대기업	27	1,643,178	3,668,356	3,778,407	4,786,373	28	134,018,435	207,181,859
	35	2,448,880	4,849,291	5,621,657		20	112,433,141	150,336,371
	40	2,576,543	5,102,089			15	76,531,339	93,886,282
중소기업	27	1,492,008	3,330,873	3,430,799	4,346,033	28	121,688,936	188,121,433
	35	2,040,110	4,039,841	4,683,283		20	93,665,665	125,242,041
	40	2,041,212	3,585,277			15	46,390,377	70,194,312

다. IRA(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

이직을 하는 경우 직전 사용자에게 받은 퇴직금(현행 퇴직금제도)이나 직전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으로부터 받는 퇴직일시금을 소득세 이연상태로 개인퇴직계좌(IRA)에 재예치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정년에 도달한 시점에서 IRA의 투자수익률로 부리되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표 IV-8>과 같다. 개인퇴직계좌의 투자수익률로는 <표 IV-1>의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표 IV-5>의 연령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였다. 회사규모별, 연령별 재직기간은

- 1) 이와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일시금이 확정기여형의 경우보다 많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퇴직연금의 종류별로 퇴직일시금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와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일시금 계산에 사용된 경제변수들을 민감도 분석 등을 행하지 않고 단순가정치로 처리하였다.

2003년 전산업 표준근로자의 연령별 평균근속연수를 감안하여 <표 IV-7>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구직에는 평균 1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다.

대기업 27세 근로자의 경우, 15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 5.5%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고, 퇴직과 동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재예치함으로써 퇴직소득세를 정년인 55세까지 이연시킬 수 있다. 이후 1년 동안의 구직기간을 거쳐 43세에 재입사하여 12년을 근무한 후 정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IRA에서 부리된 퇴직일시금과 현 직장의 퇴직일시금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현상을 반영하여 근속연수를 대기업의 경우보다 짧게 설정하였다.

<표 IV-7> 기업규모별·연령별 IRA 퇴직일시금

규모	연령	근속연수 및 구직기간				퇴직일시금 (IRA)		
		이관 퇴직일시금(이직시)						
대기업	27	15년		1년	12년		175,908,796원	
		55,025,342원			57,436,472원			
	35	10년		1년	9년		129,848,373원	
		41,830,408원			50,594,914원			
	40	10년			1년	4년		82,136,160원
		44,011,070원				20,408,357원		
중소기업	27	5년	1년	10년	1년	11년	156,317,839원	
		9,749,974원		33,308,727원		47,806,368원		
	35	10년	1년	5년	1년	3년	106,586,393원	
		34,848,026원		20,805,183원		14,049,850원		
	40	5년	1년	5년	1년	3년	58,054,031원	
		13,338,915원		15,927,363원		10,755,832원		

3. 퇴직연금의 산출

55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은 최장 20년, 생존연금은 종신동안 지급되므로 연금지급액 계산에 사용된 이자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표 IV-1>의 투자수익률 중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다. 27세의 근로자는 28년 후인 2032년에 55세 정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20년 확정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연금의 종료시점이 2052년이 되므로 연금의 예정이자율은 <표 IV-1>에 따라 당시의 예상투자수익률인 5.0%가 된다. 연금지급기간을 최소 5년부터 산출한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서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표 IV-8> 연금지급 기간에 따른 투자수익률

구분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세	5.5% (2037년)	5.5% (2042년)	5.5% (2047년)	5.0% (2052년)	5.0% (종신)	5.0% (종신)
35세	6.0% (2029년)	5.5% (2034년)	5.5% (2039년)	5.5% (2044년)	5.0% (종신)	5.0% (종신)
40세	6.0% (2024년)	6.0% (2029년)	5.0% (2034년)	5.5% (2039년)	5.0% (종신)	5.0% (종신)

주: (연도)는 연금지급종료 시점임

연금은 55세부터 1년에 한번 매년도 말에 지급받는 일시납 기말급 연금이며, 연금지급기간 중 유지비가 0.5% 부가되는 무배당상품이라고 가정하였다. 종신연금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보험상품의 관례상 12년 동안 연금가입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연금이 확정 지급된다고 가정하였다. 종신연금 계산에는 제4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이 사

용되었다.

각 연령별, 지급기간별로 연간 연금 1원에 필요한 일시납 보험료는 <표 IV-9>과 같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27세인 근로자가 55세가 되는 2032년 정년 퇴직일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원씩을 지급받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일시납 보험료는 7.57531원이다. 2004년 현재 40세의 근로자가 55세가 되는 시점에서 사망시까지 1원씩의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일시납 보험료는 13.85584원,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사망시까지 1원씩의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5.22527원을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한다(12년은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표 IV-9> 연금의 일시납 보험료

(단위: 원)

연령	확정형				종신형(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	4.29164	7.57531	10.08777	12.52452	13.85584	15.22527
35	4.23343	7.57531	10.08777	12.01013	13.85584	15.22527
40	4.23343	7.39689	10.08777	12.01013	13.85584	15.22527

가.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

<표 IV-9>을 이용하여 55세 당시 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매년 받게 되는 연금금액을 산출한 것이 <표 IV-10>과 <표 IV-11>이다. 확정연금의 연금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하였으며, 연금수급권자의 생존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경우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12년까지는 연금수급권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소득 7분위에 속하는 40세의 근로자가

7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2019년 정년인 55세에 달했을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80,210,802원이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15년 만기의 생존연금 수령을 택하는 경우 55세말부터 매년 7,951,293원을 15년 동안 수령하게 된다.

<표 IV-10>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1분위	21,735,489	5,064,616	2,869,253	2,154,638
2분위	39,158,473	9,124,370	5,169,221	3,881,777
3분위	49,893,102	11,625,661	6,586,275	4,945,901
4분위	57,606,757	13,423,030	7,604,537	5,710,555
5분위	63,704,127	14,843,787	8,409,437	6,314,987
6분위	69,524,248	16,199,941	9,177,738	6,891,935
7분위	80,210,802	18,690,030	10,588,446	7,951,293
8분위	93,823,536	21,861,952	12,385,432	9,300,722
9분위	109,570,072	25,531,074	14,464,097	10,861,676
10분위	151,339,743	35,263,882	19,978,016	15,002,301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20년	종신연금(12년 확정)	
			개인형	부부형
1분위	21,735,489	1,809,762	1,568,688	1,427,593
2분위	39,158,473	3,260,453	2,826,134	2,571,939
3분위	49,893,102	4,154,250	3,600,871	3,276,993
4분위	57,606,757	4,796,512	4,157,579	3,783,628
5분위	63,704,127	5,304,198	4,597,637	4,184,105
6분위	69,524,248	5,788,798	5,017,685	4,566,372
7분위	80,210,802	6,678,593	5,788,952	5,268,268
8분위	93,823,536	7,812,031	6,771,406	6,162,356
9분위	109,570,072	9,123,135	7,907,861	7,196,593
10분위	151,339,743	12,601,003	10,922,450	9,940,036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77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004년 현재 소득 7분위에 속하는 40세의 근로자가 2019년 정년인 55세에 달했을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89,158,472원이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부부형 종신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55세말부터 매년 5,855,953원씩을 받게 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모두 12년 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12년차까지는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표 IV-11>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1분위	24,160,124	5,629,584	3,189,323	2,394,992
2분위	43,526,677	10,142,211	5,745,858	4,314,797
3분위	55,458,775	12,922,526	7,320,987	5,497,625
4분위	64,032,902	14,920,395	8,452,838	6,347,578
5분위	70,810,447	16,499,640	9,347,526	7,019,436
6분위	77,279,812	18,007,076	10,201,533	7,660,744
7분위	89,158,472	20,774,939	11,769,608	8,838,275
8분위	104,289,734	24,300,695	13,767,051	10,338,236
9분위	121,792,826	28,379,114	16,077,595	12,073,317
10분위	168,221,985	39,197,637	22,206,602	16,675,837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24,160,124	2,011,645	1,743,678	1,586,844
2분위	43,526,677	3,624,162	3,141,395	2,858,844
3분위	55,458,775	4,617,665	4,002,555	3,642,548
4분위	64,032,902	5,331,573	4,621,365	4,205,699
5분위	70,810,447	5,895,891	5,110,512	4,650,850
6분위	77,279,812	6,434,550	5,577,417	5,075,759
7분위	89,158,472	7,423,603	6,434,720	5,855,953
8분위	104,289,734	8,683,478	7,526,770	6,849,779
9분위	121,792,826	10,140,838	8,789,998	7,999,387
10분위	168,221,985	14,006,670	12,140,870	11,048,866

나.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연금액 산출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회사규모별·연령별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연금지급액을 산출한 것이 <표 IV-12>과 <표 IV-13>이다. 연령별로 연금지급기간의 중기가 상이하므로 일시납보혐료 계산에 사용되는 투자수익률이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절차가 동일하다.

<표 IV-12>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대기업	27	134,018,435	31,227,820	17,691,469	13,285,240
	35	112,433,141	26,558,431	14,842,044	11,145,491
	40	76,531,339	18,077,875	10,346,425	7,586,548
중소기업	27	121,688,936	28,354,907	16,063,880	12,063,018
	35	93,665,665	22,125,265	12,364,592	9,285,072
	40	46,390,377	10,958,118	6,271,608	4,598,676

규모	연령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134,018,435	10,700,484	9,672,341	8,802,368
	35	112,433,141	9,361,522	8,114,493	7,384,640
	40	76,531,339	6,372,230	5,523,399	5,026,600
중소기업	27	121,688,936	9,716,055	8,782,500	7,992,563
	35	93,665,665	7,798,886	6,760,012	6,151,987
	40	46,390,377	3,862,603	3,348,073	3,046,933

<표 IV-1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대기업	27	207,181,859	48,275,731	27,349,607	20,537,927
	35	150,336,371	35,511,755	19,845,563	14,902,837
	40	93,886,282	22,177,378	12,692,674	9,306,942
중소기업	27	188,121,433	43,834,435	24,833,483	18,648,468
	35	125,242,041	29,584,089	16,532,918	12,415,237
	40	70,194,312	16,580,972	9,489,709	6,958,359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207,181,859	16,542,098	14,952,671	13,607,762
	35	150,336,371	12,517,460	10,850,035	9,874,134
	40	93,886,282	7,817,255	6,775,935	6,166,477
중소기업	27	188,121,433	15,020,249	13,577,048	12,355,868
	35	125,242,041	10,428,030	9,038,934	8,225,932
	40	70,194,312	5,844,590	5,066,044	4,610,382

다.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액 산출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회사규모별·연령별로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 지급액을 산출한 것이 <표 IV-14>이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35세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3곳의 직장을 거쳐

8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55세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예치·부리된 전 직장의 퇴직일시금과 현 직장에서 받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106,586,393원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기간 별로 <표 IV-14>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표 IV-14> 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대기업	27	175,908,796	40,988,751	23,221,321	17,437,830
	35	129,848,373	30,672,176	17,140,989	12,871,862
	40	82,136,160	19,401,820	11,104,152	8,142,153
중소기업	27	156,317,839	36,423,835	20,635,163	15,495,779
	35	106,586,393	25,177,339	14,070,228	10,565,904
	40	58,054,031	13,713,252	7,848,440	5,754,893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175,908,796	14,045,151	12,695,641	11,553,738
	35	129,848,373	10,811,567	9,371,381	8,528,477
	40	82,136,160	6,838,904	5,927,908	5,394,726
중소기업	27	156,317,839	12,480,943	11,281,728	10,266,999
	35	106,586,393	8,874,704	7,692,523	7,000,624
	40	58,054,031	4,833,754	4,189,859	3,813,005

4.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비교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은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연금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퇴직일시금의 규모,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양자의 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크기 비교를 위해 연금소득세를 55세 정

년인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현재가치 환산표는 <표 IV-15>에 나타나있다. 예를 들어 27세의 근로자가 정년인 2032년 말부터 10년 동안 매년 1원씩 수령하는 10년 확정연금의 2032년 초 현재가치는 7.53763원이 된다. 연금의 현재가치는 유비 0.5%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시납보험료와는 다르다.

<표 IV-15> 기말금 연금 현재가치

(단위: 원)

연령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	4.27028	7.53763	10.03758	12.46221	13.78691	15.14952
35	4.21236	7.53763	10.03758	11.95038	13.78691	15.14952
40	4.21236	7.36009	10.03758	11.95038	13.78691	15.14952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가정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성인이 되어 가족구조가 부부 2인만이 살거나 아니면 미출가 성인자녀와 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런 양상은 2004년 3월 발표된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동 통계에 의하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1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남자는 2.0세, 여자는 2.2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통상의 퇴직연금수령연령인 55세에는 첫째 자녀가 빠르면 24세에 이르고 둘째 자녀라도 첫째 자녀와의 연령차를 감안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세가 넘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2명으로 하고, 특별공제는 표준공제만을 반영하여 연금소득세를 계산하였다.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

1)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10분위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액에 따라 <표 IV-16>과 같이 소득세액이 산출된다.

<표 IV-16>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단위: 원)					
소득 계층	근속 연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제
1분위	28	21,735,489	0	14,829,202	21,600,000
2분위	28	39,158,473	394,131	26,716,165	21,600,000
3분위	28	49,893,102	877,190	34,039,947	21,600,000
4분위	28	57,606,757	1,224,304	39,302,646	21,600,000
5분위	28	63,704,127	1,498,686	43,462,624	21,600,000
6분위	28	69,524,248	1,760,591	47,433,445	21,600,000
7분위	28	80,210,802	2,241,486	54,724,427	21,600,000
8분위	28	93,823,536	2,854,059	64,011,819	21,600,000
9분위	28	109,570,072	3,562,653	74,755,012	21,600,000
10분위	28	151,339,743	5,442,288	103,252,686	21,600,000
소득 계층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균 과세표준	연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기납입세액
1분위	0	0	0	0	0
2분위	5,116,165	182,720	16,445	460,455	66,324
3분위	12,439,947	444,284	39,986	1,119,595	242,406
4분위	17,702,646	632,237	56,901	1,593,238	368,934
5분위	21,862,624	780,808	70,273	1,967,636	468,950
6분위	25,833,445	922,623	83,036	2,325,010	564,419
7분위	33,124,427	1,183,015	106,471	2,981,198	739,712
8분위	42,411,819	1,514,708	136,324	3,817,064	963,005
9분위	53,155,012	1,898,393	170,855	4,783,951	1,221,298
10분위	81,652,686	2,916,167	262,455	7,348,742	1,906,453

예를 들어, 소득 8분위 40세 근로자의 경우 55세 정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93,823,536원이다. 이 근로자의 경우 27세에 입사하여 13년간 근속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 34,200,101원을 이미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근로자는 급여비례에 의한 퇴직소득공제(64,011,819원)를 받을 수 있으며, 근속연수가 28년(13년+15년)이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21,600,000원(1,200만원+120만원×8년)이고, 따라서 퇴직소득과세표준은 42,411,819원 (93,823,536원+34,200,101원-64,011,819원-21,600,000원)이다. 이를 근속연수 28년으로 나누면 연평균과세표준이 1,514,708원이 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한계세율인 9%를 곱하면 연평균산출세액이 136,324원이 된다. 이를 근속연수 28년으로 다시 곱하면 산출세액이 3,817,064원이 되는데, 40세 시점에서 가정한 중간정산시 이미 963,005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결정세액은 2,854,059원이 된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5년 확정연금)

(단위: 원)

소득 계층	산출세액 현 가	연 간 연금액	연 금 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1분위	0	5,064,616	3,512,923	2,600,000	0	0
2분위	838,572	9,124,370	4,312,437	2,600,000	2,211,933	199,074
3분위	1,692,016	11,625,661	4,562,566	2,600,000	4,463,095	401,679
4분위	2,305,281	13,423,030	4,742,303	2,600,000	6,080,727	547,265
5분위	2,790,045	14,843,787	4,884,379	2,600,000	7,359,408	662,347
6분위	3,252,767	16,199,941	5,019,994	2,600,000	8,579,947	772,195
7분위	4,413,651	18,690,030	5,269,003	2,600,000	10,821,027	1,047,785
8분위	6,578,180	21,861,952	5,586,195	2,600,000	13,675,756	1,561,636
9분위	9,081,999	25,531,074	5,953,107	2,600,000	16,977,966	2,156,034
10분위	16,426,108	35,263,882	6,000,000	2,600,000	26,663,882	3,899,499

8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한편 연금소득세의 경우 퇴직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과세를 받게 된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며, 여기서는 종합소득의 본인공제(100만원)와 배우자공제(100만원), 표준공제(60만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8분위 근로자의 정년시 퇴직일시금이 93,823,536원인데, 이를 55세말부터 5년 동안 확정연금으로 매년 수령한다면 연간 21,861,952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제는 5,586,195원이며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260만원을 차감하고 나면 13,675,756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 구간의 한계소득세율은 18%로써 1,561,636원의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매년 납부하며 이를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6,578,180원이 된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2,854,059원인데 비해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훨씬 많으므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 수령을 원할 것이다.

<표 IV-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0	0	0	0	0	0	0
2분위	394,131	838,572	0	0	0	0	0
3분위	877,190	1,692,016	111,960	0	0	0	0
4분위	1,224,304	2,305,281	651,564	0	0	0	0
5분위	1,498,686	2,790,045	1,078,102	0	0	0	0
6분위	1,760,591	3,252,767	1,497,018	373,592	0	0	0
7분위	2,241,486	4,413,651	2,338,036	1,139,196	261,220	0	0
8분위	2,854,059	6,578,180	3,409,339	2,141,603	1,236,461	393,495	0
9분위	3,562,653	9,081,999	4,648,571	3,410,727	2,377,814	1,521,605	896,165
10분위	5,442,288	16,426,108	9,247,497	6,777,238	5,744,325	4,752,601	4,016,789

<표 IV-18>는 각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에 따라 부담하게 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를 비교한 것이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보다 큰 부분인데,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장기화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려 할 것이다.

2)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의 경우도 퇴직일시금의 크기만 다를 뿐 확정급여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40세에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소득 5분위 근로자는 55세 정년에 70,810,447원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1,818,470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IV-19> 참조). 이 근로자 역시 27세에 입사하여 13년간 근속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 23,221,120원을 이미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V-19>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단위: 원)

소득 계층	근속 년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 제
1분위	15	24,160,124	0	16,041,520	21,600,000
2분위	15	43,526,677	590,700	28,900,267	21,600,000
3분위	15	55,458,775	1,127,645	36,822,783	21,600,000
4분위	15	64,032,902	1,513,481	42,515,719	21,600,000
5분위	15	70,810,447	1,818,470	47,015,783	21,600,000
6분위	15	77,279,812	2,109,592	51,311,227	21,600,000
7분위	15	89,158,472	2,644,131	59,198,263	21,600,000
8분위	15	104,289,734	3,325,038	69,244,917	21,600,000
9분위	15	121,792,826	4,112,677	80,866,389	21,600,000
10분위	15	168,221,985	6,201,989	111,693,807	21,600,000

8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소득 계층	근속 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균 과세표준	연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기납입 세액
1분위	15	0	0	0	0	0
2분위	15	7,300,267	260,724	23,465	657,024	66,324
3분위	15	15,222,783	543,671	48,930	1,370,051	242,406
4분위	15	20,915,719	746,990	67,229	1,882,415	368,934
5분위	15	25,415,783	907,707	81,694	2,287,420	468,950
6분위	15	29,711,227	1,061,115	95,500	2,674,010	564,419
7분위	15	37,598,263	1,342,795	120,852	3,383,844	739,712
8분위	15	47,644,917	1,701,604	153,144	4,288,043	963,005
9분위	15	59,266,389	2,116,657	190,499	5,333,975	1,221,298
10분위	15	90,093,807	3,217,636	289,587	8,108,443	1,906,453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대신 10년 확정연금을 선택하였다면 55세말부터 65세말까지 매년 부담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3,355,025원으로 퇴직소득세 1,818,470원보다 많게 된다. 따라서 역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거나 연금 수령기간을 늘려 세부담을 경감시키려 할 것이다 (<표 IV-20> 참조).

<표 IV-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중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0	0	0	0	0	0	0
2분위	590,700	1,185,861	0	0	0	0	0
3분위	1,127,645	2,134,508	501,303	0	0	0	0
4분위	1,513,481	2,816,184	1,101,101	0	0	0	0
5분위	1,818,470	3,355,025	1,598,240	465,738	0	0	0
6분위	2,109,592	3,947,601	2,107,371	929,215	51,239	0	0
7분위	2,644,131	5,836,399	3,042,205	1,780,223	902,247	59,282	0
8분위	3,325,038	8,242,385	4,233,015	2,985,148	1,986,278	1,143,313	517,872
9분위	4,112,677	11,205,901	5,610,485	4,395,845	3,362,932	2,397,265	1,771,825
10분위	6,201,989	19,408,780	11,904,717	8,137,896	7,104,983	6,113,260	5,377,447

<표 IV-18>과 <표 IV-20>에서 보듯이 연금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점차 격차가 작아져 연금으로 수령하되 급부기간을 길게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는 퇴직연금 수혜자들의 성향에 달려 있을 것인데 퇴직일시금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년 유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9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훨씬 크게 되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연금전환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회사규모별·연령별 소득세 산출

회사 규모별·연령별 소득세 산출의 경우에도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과 같다. 다만,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의 경우와는 달리 중간정산을 가정하지 않고 2004년 현재부터 정년까지 해당연령의 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근속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에서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확정기여형의 경우보다 퇴직일시금의 크기가 작았다. 그러나 승급이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존재하거나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종류별 퇴직일시금 크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2004년 현재 중소기업의 27세 근로자가 28년을 근속하여 2034년에 정년 55세에 달하면 퇴직일시금은 121,688,936원이 되며,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 후 퇴직소득세로 3,532,002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져 퇴직일시금과 퇴직소득세도 많아지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으므로 대기업 근로자가

8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IV-21>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단위: 원)

규모	연령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제
대기업	27	28	134,018,435	4,086,830	67,009,217	21,600,000
	35	20	112,433,141	3,979,491	56,216,571	12,000,000
	40	15	76,531,339	2,723,910	38,265,670	8,000,000
중소기업	27	28	121,688,936	3,532,002	60,844,468	21,600,000
	35	20	93,665,665	3,134,955	46,832,832	12,000,000
	40	15	46,390,377	1,367,567	23,195,188	8,000,000

규모	연령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균 과세표준	연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대기업	27	45,409,217	1,621,758	145,958	4,086,830
	35	44,216,571	2,210,829	198,975	3,979,491
	40	30,265,670	2,017,711	181,594	2,723,910
중소기업	27	39,244,468	1,401,588	126,143	3,532,002
	35	34,832,832	1,741,642	156,748	3,134,955
	40	15,195,188	1,013,013	91,171	1,367,567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수령기간에 따라 매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표 IV-22>과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구간이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구간으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것이다. 퇴직일시금이 동일한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연간수령 연금액이 작아지지만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는 동일하므로 낮은 한계세율로 적용되어 연금소득세 부담이 더 적어진다.

<표 IV-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4,086,830	13,549,645	6,731,168	5,381,192	4,071,892	3,356,556	2,647,690
	35	3,979,491	9,825,412	4,991,458	3,641,482	2,608,569	1,726,721	1,101,280
	40	2,723,910	3,995,915	2,193,751	875,593	0	0	0
중소기업	27	3,532,002	11,341,377	5,737,447	4,387,471	3,078,171	2,389,823	1,764,382
	35	3,134,955	6,757,866	3,478,855	2,128,879	1,225,150	382,185	0
	40	1,367,567	1,464,249	0	0	0	0	0

2) 확정급여형

일정연령대에 이르면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아진다는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1개월치의 평균임금이 각출되어 적립·부리되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보다 많은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2004년 현재 대기업의 35세 근로자가 20년을 근속하여 2024년에 정년인 55세가 되면 퇴직일시금은 150,336,371원이 되며,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 후 퇴직소득세로 5,685,137원을 납부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27세 근로자는 28년을 근속하여 퇴직시점에서 188,121,433원의 퇴직일시금을 받고 6,521,464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IV-2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단위: 원)

규모	연령	근속 년수	퇴직급여액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 제
대기업	27	28	207,181,859	7,379,184	103,590,930	21,600,000
	35	20	150,336,371	5,685,137	75,168,185	12,000,000
	40	15	93,886,282	3,504,883	46,943,141	8,000,000
중소기업	27	28	188,121,433	6,521,464	94,060,716	21,600,000
	35	20	125,242,041	4,555,892	62,621,021	12,000,000
	40	15	70,194,312	2,438,744	35,097,156	8,000,000

규모	연령	근속 년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균 과세표준	연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대기업	27	28	81,990,930	2,928,247	263,542	7,379,184
	35	20	63,168,185	3,158,409	284,257	5,685,137
	40	15	38,943,141	2,596,209	233,659	3,504,883
중소기업	27	28	72,460,716	2,587,883	232,909	6,521,464
	35	20	50,621,021	2,531,051	227,795	4,555,892
	40	15	27,097,156	1,806,477	162,583	2,438,74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정년에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을 원할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를 정년 당시로 환산한 현재가치는 <표 IV-24>와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부분으로 동 범주에 속한 근로자들은 현행 퇴직소득관련세제 하에서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것이다.

확정급여형과 비교해보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부분이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연금수령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일수록 연금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중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7,379,184	26,653,542	18,655,091	13,522,069	9,968,646	9,253,309	8,517,497
	35	5,685,137	16,614,051	9,308,826	6,696,369	5,663,456	4,671,732	3,935,920
	40	3,504,883	6,793,428	3,592,507	2,146,660	1,240,956	397,991	0
중소기업	27	6,521,464	23,239,735	15,399,553	10,449,642	8,432,432	7,717,096	6,981,283
	35	4,555,892	12,119,544	6,023,817	4,673,841	3,640,928	2,649,204	2,018,933
	40	2,438,744	3,382,776	1,683,005	421,597	0	0	0

<표 IV-22>과 <표 IV-24>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즉 퇴직일시금의 크기가 클수록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빈도 차이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액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나 전반적인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특징적인 결과는 확정기여형일 경우, 소득계층별 분석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중신연금에서 조차도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에 비하여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소득계층별 분석과 기업규모·취업연령별 분석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긴 대기업의 젊은 취업자들이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것은 현 상황에서 중규모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현재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들은 퇴직연금 전환 유인이 일부 있음을 함축해주는 결과이다.

3) 개인퇴직계좌(IRA)

이직시에도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소득세를 이연하여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이관이 가능한 경우, 정년시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표 IV-25>과 같다. 근속연수 공제에 사용되는 근속연수는 이직시 소요기간 1년씩을 제외하고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한 총근속연수를 사용하였다.

<표 IV-25>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규모	연령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과세)	퇴직소득세(이연)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대기업	27	27	175,908,796	6,436,136	6,079,896	87,954,398
	35	19	129,848,373	4,846,107	4,835,177	64,924,187
	40	14	82,136,160	3,083,209	3,048,127	41,068,080
중소기업	27	25	156,317,839	5,348,464	5,414,303	78,158,920
	35	18	106,586,393	3,922,617	3,860,388	53,293,196
	40	13	58,054,031	2,446,280	2,036,431	29,027,016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이연)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대기업	27	20,400,000	67,554,398	2,502,015	225,181	6,079,896
	35	11,200,000	53,724,187	2,827,589	254,483	4,835,177
	40	7,200,000	33,868,080	2,419,149	217,723	3,048,127
중소기업	27	18,000,000	60,158,920	2,406,357	216,572	5,414,303
	35	10,400,000	42,893,196	2,382,955	214,466	3,860,388
	40	6,400,000	22,627,016	1,740,540	156,649	2,036,431

한편 이직시에 퇴직소득세의 이연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직시마다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 퇴직소득세의 55세 정년시 증가를 퇴직소득세(과세)란에 기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퇴직소득세 이연이 허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 이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직시마다 받는 퇴직일시금의 증가는 이연 허용시의 퇴직일시

금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소득세의 이연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가입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를 비교하여 <표 IV-26>에서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큰 부분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동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후생활자금 조기에 소진되어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세제상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소득세의 이연효과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득세 절감목적으로 연금수령기간을 근로자의 평균여명보다 늘리는 경우 퇴직연금 중 많은 부분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유족에게 상속됨으로서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표 IV-26> 개인퇴직계좌(IRA)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6,079,896	21,052,397	13,430,949	8,757,430	7,448,130	6,732,794	5,996,981
	35	4,835,177	12,944,559	6,395,073	5,045,098	4,012,185	3,020,461	2,348,939
	40	3,048,127	4,899,378	2,645,482	1,277,132	399,156	0	0
중소기업	27	5,414,303	17,543,569	10,273,003	7,178,458	5,869,158	5,153,821	4,418,009
	35	3,860,388	8,840,610	4,520,227	3,170,251	2,150,815	1,307,849	682,409
	40	2,036,431	2,404,305	780,815	0	0	0	0

V.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케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상 정년까지 근속한 근로자나 이직시 개인퇴직계좌에 퇴직일시금을 계속 이관하여 온 근로자, 또는 고액급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오히려 퇴직일시금의 세액보다 높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할만한 충분한 세제상의 유인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이 Simulation결과에 의해서 밝혀졌다. 본 장에서는 Simulation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퇴직연금 세제체계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 기본방향

지금까지 주요 외국의 세제체계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상을 반영한 Simulation을 통해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또는 현행 퇴직금제도에 의해 산출된 퇴직소득에 대해 세법을 적용한 결과, 어느 것이 수혜자에게 세액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연구에서 행한 실증분석용 Simulation과 동일한 사례를 설정하여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 개정의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27세에 월평균임금 1,643,178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근로자(<표 IV-6> 참조)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 근로자는 임금인상률 5.5%와 투자수익률 6%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년인 55세부터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예정이율 5.5%, 유지비 0.5%의 기말급 확정연금이라 가정하였다.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획득하는 근속 10년 후부터 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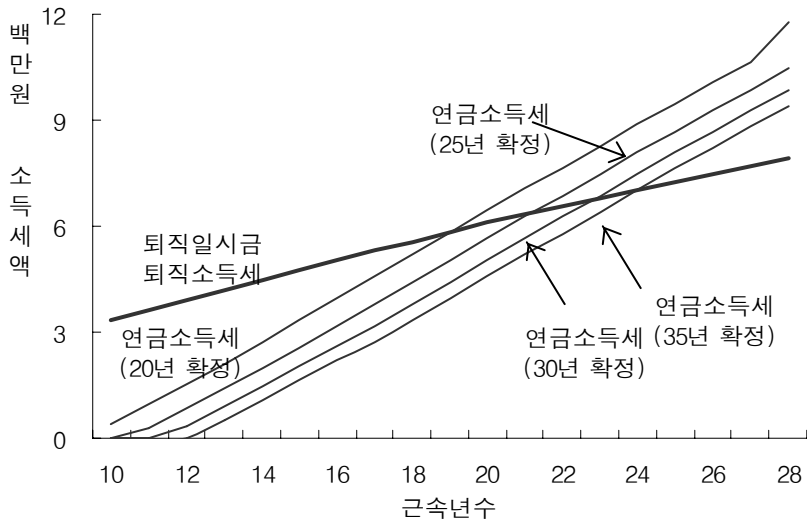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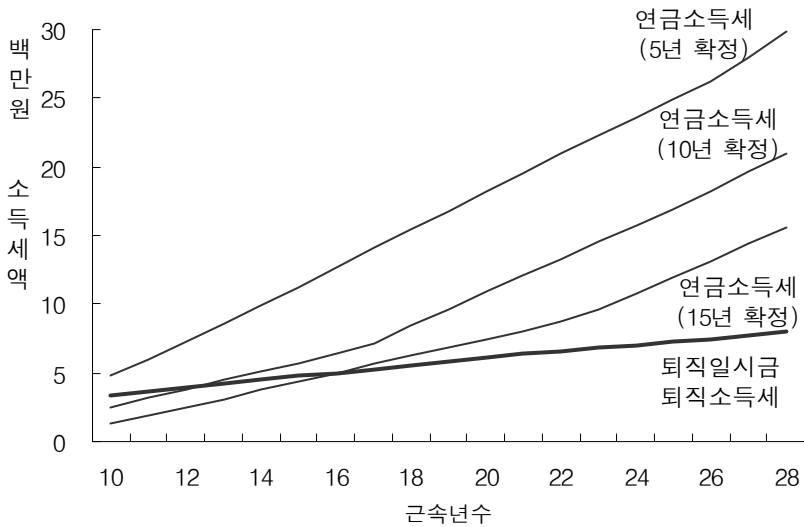
을 더 근속한 55세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10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10년 동안 매년 1회분의 월평균임금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각출되어 운영되며, 퇴사하면 각출이 중단되고 퇴직 당시 본인의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55세까지 운영되게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인 55세에 도달했을 때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것인지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퇴직소득세액이 <그림 V-1>의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선에 근속년수 별로 나타나 있다. 만일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동안 확정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55세 기준 현재가치가 각 연금지급기간별 선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V-1>을 보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액은 증가되지만 퇴직일시금 소득세제에 적용되는 연분연승법의 영향으로 인해, 그 증가 정도가 연금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근로자가 5년에서 35년의 확정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년수가 늘어나면서 퇴직일시금도 증가하여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액도 함께 증가한다. 연금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일시금이 증가하면 연금소득세액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Simulation 결과와 종합하면, 현행 세제체계 하에서는 근속년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에 비하여 불리하므로 젊은 계층일수록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 결과는 현재시점에서 근속년수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층일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이유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림 V-1> 근속년수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현행 연금소득세제상 조세절감이 가능하다. <그림 V

-1>에서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한 구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수령기간을 평균여명보다 장기화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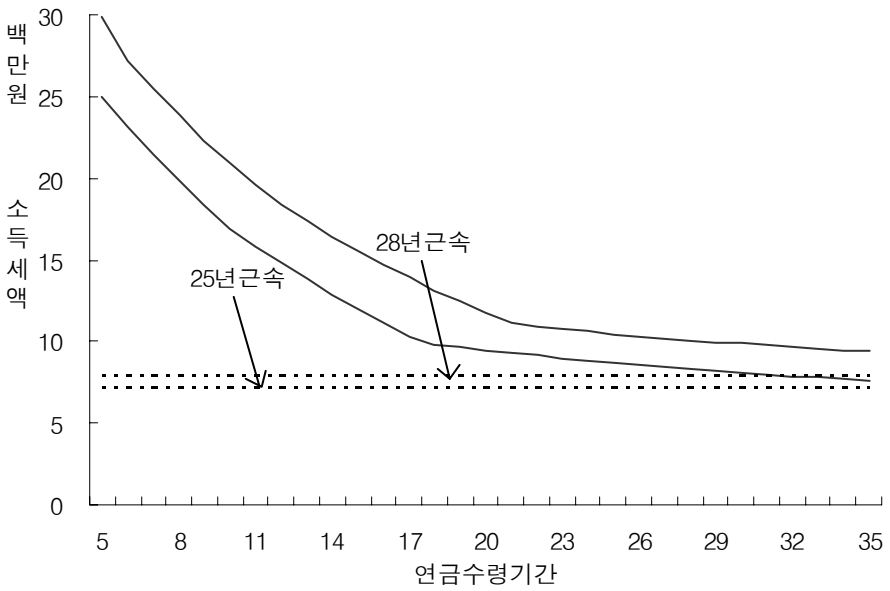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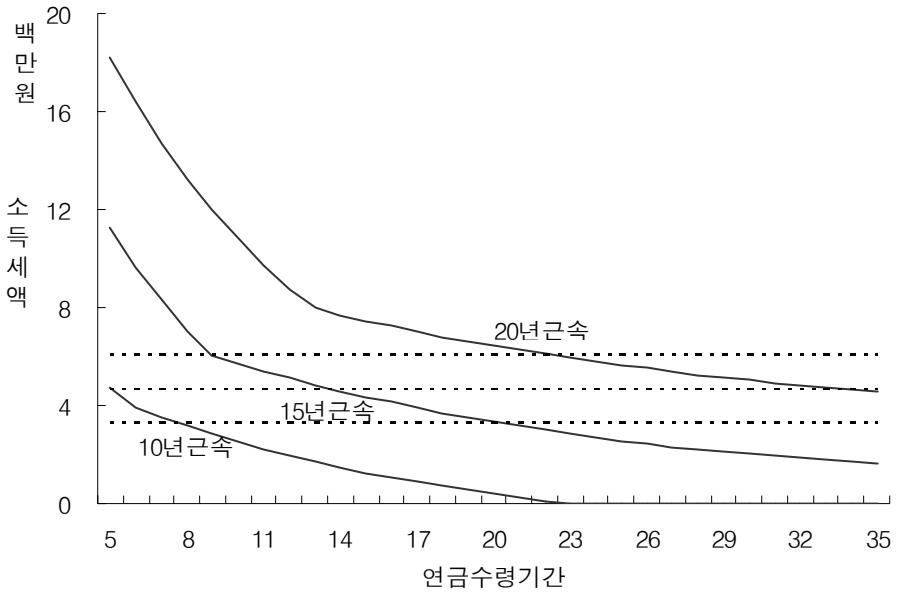
<그림 V-2>은 10년, 15년, 20년, 25년, 28년의 각 근속년수별로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과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점선으로 표시된 평행선은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 소득세액을 나타내며, 실선으로 표시된 선은 각 근속기간별로 연금수령기간을 점차 장기화하였을 경우 연금소득세액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0년 근속자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하여야만 연금소득세 현재가치를 퇴직소득세보다 낮출 수 있다. 근속년수가 증가하면서 연금수령기간을 장기로 가져가면 연금소득세 현재가치를 퇴직소득세보다 낮출 수 있다. 15년 근속자의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14년 이상으로 하여야만 하며, 20년 근속자는 22년, 25년 근속자부터는 연금수령기간을 35년 이상으로 하여도 퇴직소득세 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가 현행 연금소득세제 하에서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퇴직일시금보다 불리한 것을 인식하여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갈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노후보장용 소득이 상속재산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령기간이 길 경우, 국민연금 수령기간과 중복되어 다시 소득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현행 퇴직연금이 입법 예고된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하는데 적절한 세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V-2> 연금수령기간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2. 세부 방안

이제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들을 실증분석결과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퇴직연금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세제 및 연금소득세제와 직결된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현행 퇴직일시금 세제는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급여비례공제로 공제하고, 다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누진적으로 공제하고 있다. 퇴직일시금은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속기간 중의 근로소득이 퇴직시까지 이연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년수공제가 반영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평균산출세액을 구한 후 이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최종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에는 최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근속년수 연분연승법). 이에 반해 연금소득은 공제액이 퇴직일시금에 비해 훨씬 적어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퇴직일시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Simulation추정과정에서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산출시 적용된 한계세율을 보면, 퇴직소득세는 모두 9%의 최저한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연금소득세는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18%인 경우도 있다 (<표 V-1>부터 <표 V-2>까지 참조).

10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표 V-1>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구분	퇴직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9%	-	-	-	-	-	-
2분위		9%	-	-	-	-	-
3분위			9%	-	-	-	-
4분위				-	-	-	-
5분위				-	-	-	-
6분위			9%	-	-	-	-
7분위		-		-	-	-	
8분위		18%	9%	9%	9%	9%	-
9분위							-
10분위			18%	-	-	-	9%

주: ‘-’ 는 세액이 0임을 의미.

<표 V-2> 소득계층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구분	퇴직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9%	-	-	-	-	-	-
2분위		9%	-	-	-	-	-
3분위			9%	-	-	-	-
4분위				-	-	-	-
5분위				-	-	-	-
6분위			9%	-	-	-	-
7분위		-		-	-	-	
8분위		18%	9%	9%	9%	9%	-
9분위							-
10분위			18%	-	-	-	9%

<표 V-3>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급여형)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9%	18%	9%	9%	9%	9%	9%
	35							
	40							
중소기업	27	9%	18%	9%	9%	9%	9%	9%
	35							-
	40							-

<표 V-4> 연령별 한계세율비교(확정기여형)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9%	18%	18%	18%	9%	9%	9%
	35				9%			
	40				-			
중소기업	27	9%	18%	18%	18%	9%	9%	9%
	35				9%			
	4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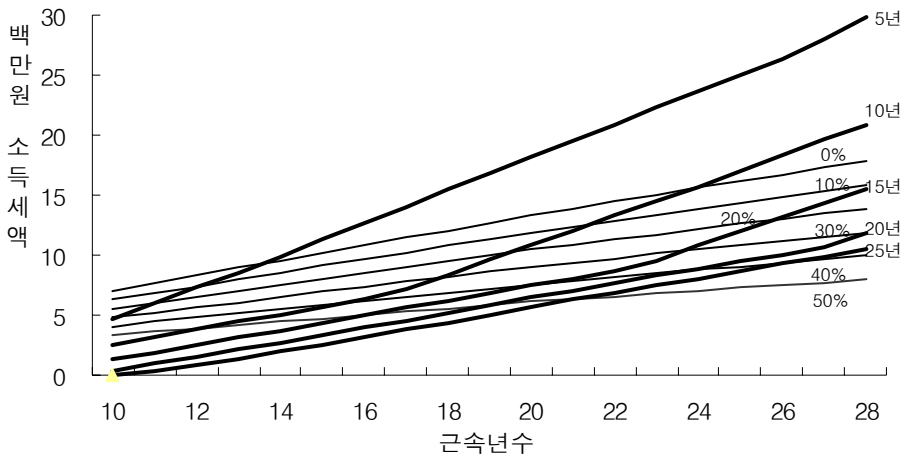
<표 V-5> 개인퇴직계좌 (IRA) 한계세율비교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9%	18%	18%	9%	9%	9%	9%
	35			9%				
	40			-				
중소기업	27	9%	18%	18%	9%	9%	9%	9%
	35			9%				
	40			-				

따라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도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일시금 소득세제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금액의 점진적인 축소 방안을 제시한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급여액의 50%를 공제해 주는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누진적으로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표 II-1> 참조)로 나뉜다. 퇴직금이 후불임금 성격이 있다고 판정한 대법원 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 의하면, 퇴직급여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이 과세이연된 것이므로 근속연수공제는 이론적으로 도입이 타당하지만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는 세액을 크게 감액시켜 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속연수공제보다는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V-3> 퇴직급여비례공제 축소



<그림 V-3>은 <그림 V-1>과 동일한 가정 하에서 근속연수와 연금수급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산 실선으로 표시된 퇴직소득세액은 X-축의 근속연수에 따라 55세에

퇴직일시금을 받지만 퇴직소득세액을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행 제도(50% 공제)부터 폐지하는 경우(0%)를 구분하여 계산한 것이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연금소득세액 선은 X-축의 근속년수에 따라 55세 말 시점부터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소득세액이 연금수급기간을 5년에서 25년까지 5년씩 연장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속하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의 시점인 55세부터 65세까지 10년간 지급되는 가교연금으로 가정한다면 현재 퇴직급여액의 50%로 인정되는 퇴직급여비례공제를 없애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중 연금을 선택할 유인이 상당히 높아짐을 <그림 V-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폐지할 경우에는 근속년수가 24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많아져서 퇴직연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만일 10년 이상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훨씬 작아서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의 폐지가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간주하더라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지급기간을 충분히 장기화하면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20~30% 정도로 줄여도 퇴직연금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그림 V-3>에서 확인해보면, 연금지급기간별 소득세를 나타내는 굵은 실선 중 25년 선을 보면, 퇴직급여비례공제 수준을 30%로 축소해도 근속년수가 28년에 이르더라도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일시금소득세액보다 항상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연금지급기간이 장기화되면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이상의 실증결과에서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의 폐지 내지는 비율 축소 가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임을 알 수 있다.¹⁾

1) 물론 <그림 V-3>에 적용된 임금관련 가정과 투자수익률이 변할 경우, 이

다만, 이러한 조치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하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 따라 법인세법상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인정 한도를 점차 축소하여 법정퇴직금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시도해볼만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금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퇴직금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서 퇴직소득을 후불임금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은 퇴직급여가 근로소득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소득을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으로 합산시켜 과세시키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세액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퇴직소득 성격을 충실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연금소득세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금소득 공제금액 인상

퇴직연금소득은 근속기간 중 획득한 근로소의 일부를 노후를 위해 미래로 이연한 것이므로 근로소득 못지않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연금소득 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낮으므로 연금소득 공제금액의 한도를 증액시키거나 공제율을 올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V-6>에서와 같이 2004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공제되는 소득의 범위가 넓고 공제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반해, 연금소득공제는 공제되는 소득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공제한도 역시 연간 6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III-6> 참조).

러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6> 근로소득 공제금액(2004년 귀속기준)

총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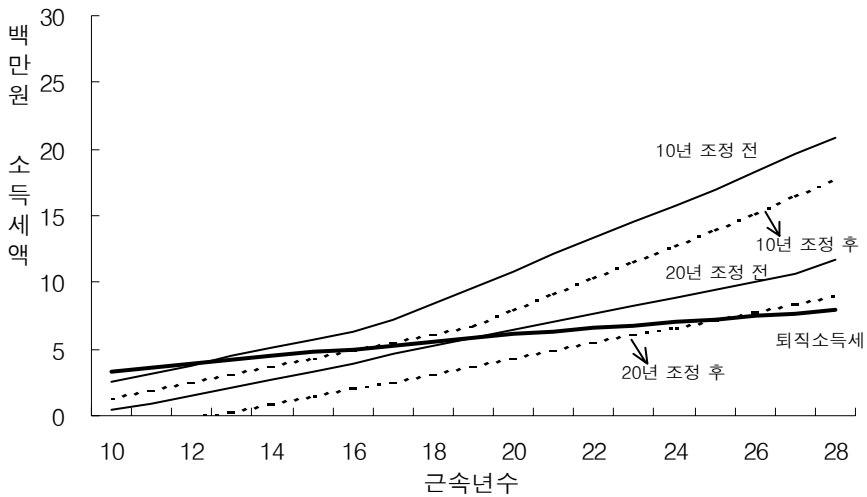
더구나 연금소득세제는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소득에도 적용되므로 공제되는 소득의 범위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각각 40%, 20%로 가정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이후의 소득은 퇴직이전 근로소득의 60%가 될 것이다. 연금소득 공제금액 수준도 여기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범위의 60% 정도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V-4>는 <표 V-6>의 근로소득 공제금액 범위를 60%로 하향조정하여 연금소득세 계산에 적용한 것이다. 가는 실선은 현행 연금소득공제로 계산한 연금소득세(연금수급기간 10년 및 20년) 선이고, 점선은 근로소득공제금액의 60%를 연금소득공제로 하여 계산한 연금소득세선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공제금액 확대에 의해 점선이 실선 아래쪽으로 이동하였다. 10년 조정 전·후의 연금소득세 선을 비교해보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지급 개시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공제의 60%까지로 확대해도 근속년수가 길수록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서 장기간(예, 20년) 수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낮으므로 연금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방법이 세제상 유인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만, 이 경우에는 연금수급액이 낮아 지출수준에 맞추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V-4> 연금소득공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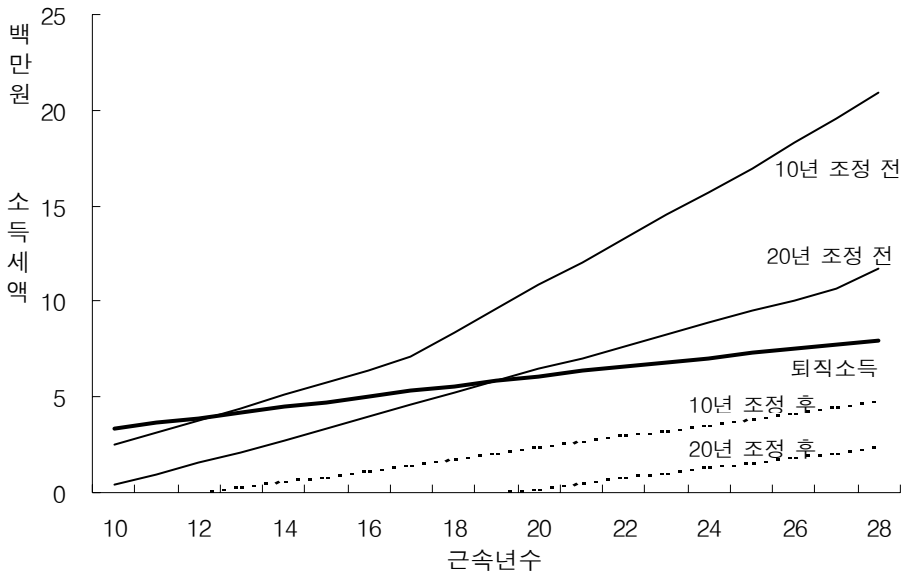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퇴직일시금의 퇴직소득비례공제의 경우처럼 연금소득의 50%를 공제하는 “연금소득비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령방법의 차이일 뿐으로 소득의 원천은 퇴직급여소득이다. 현재 법정퇴직금제의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퇴직연금에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림 V-5>는 퇴직소득의 경우와 같이 연금소득의 50%를 연금소득비례공제로 공제한 후, 연금소득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한 결과이다.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연금소득세(연금수급기간 10년 및 20년)선이 연금소득공제 범위 확대에 의해 각각 하향 조정되어 점선으로 표시되어

아래쪽으로 대폭 이동하였다. 이로써 연금소득비례공제제도는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를 퇴직일시금의 퇴직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만들어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준다.

<그림 V-5> 연금소득비례공제 신설



그러나 현행 체제처럼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특별공제를 비롯한 각종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연금소득비례공제제도가 퇴직소득비례공제제도가 형평성 측면에서 차별적일 수 있다.

연금소득공제의 불충분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고령자들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다. 즉, 현행 의료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주거비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다.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수령하는 것이므로 세제 체계상 연간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퇴직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금소득도 퇴직소득세제와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세제체계 중 영국사례와 유사한 방법이다. 영국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퇴직급여 세제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시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지급형태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시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수용하여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사례의 운용취지를 도입하려면 퇴직일시금 위주의 현행 퇴직소득세제에 퇴직연금이 수용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퇴직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현재의 퇴직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취지로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제도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 중 과세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 과세하는 방법이다.

<표 V-7>은 <그림 V-1>의 사례에서 근속연수가 20년인 대기업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일원화하여 산출한 것이다. 퇴직소득세액은 현행 세제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연금소득세액은 다음과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27세부터 20년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수급개시시점인 55세에 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일시금이 159,911,410원이 된다.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여 55세말부터 10년 유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은 21,109,542원이 된다. 이 연금액에 퇴직일시금과 동일한 퇴직소득공제비율 57.5% (=퇴직급여비례공제

50% + 근속년수 비례공제 7.5%)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8,970,678원이 되며, 과세표준에 9%를 적용하면 연간 807,361원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6,085,586원이 된다.

이를 일반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V-6>로써 근속연수에 따라 5년,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현가가 비교되어 있다.

<표 V-7> 퇴직관련 소득세제의 일원화 사례(근속연수 20년)

(단위 : 원)

퇴직연금 수급기간	퇴직일시금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년수 비례공제	퇴직소득 공제비율	퇴직소득세
5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10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15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20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25년	159,911,410	79,955,705	12,000,000	57.5%	6,116,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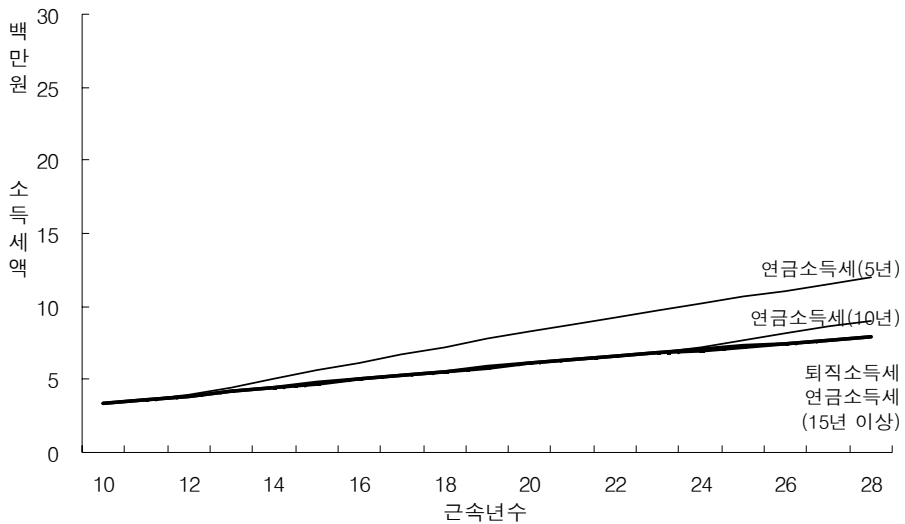
퇴직연금 수급기간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비율	과세표준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 가치
5년	37,261,178	57.5%	15,834,453	1,950,201	8,327,915
10년	21,109,542	57.5%	8,970,678	807,361	6,085,586
15년	15,852,010	57.5%	6,736,446	606,280	6,085,586
20년	13,314,706	57.5%	5,658,197	495,761	6,085,586
25년	11,646,176	57.5%	4,949,141	453,676	6,085,586

굵은 실선이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이며, 얇은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각 연금수급기간별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현가이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체계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연금수급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11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있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 유기연금의 경우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연금수령액의 과세표준이 한계세율(9%→18%)을 넘는 구간인 근속연수 12년과 24년을 지나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까지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거의 유사한 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는 경우 운영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하게 되고, 연금수급기간도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에 따라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림 V-6> 퇴직관련 소득세제 일원화



퇴직관련소득 일원화 체계하에서 퇴직연금적립금액 중 비과세되는 부분에 한해 퇴직일시금 지급도 고려해볼 수 있다. 55세 이후 퇴직시점에 일시금이 필요하나 일부는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선

택에 따라 적립금액의 50%까지를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향후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정도만큼 비과세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앞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가 20년인 대기업 근로자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급자격 발생시점인 55세에 159,911,410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제비율은 57.5%가 된다(<표 V-7> 참조).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중 25%를 비과세퇴직일시금으로 받고 75%를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 선택한 연금수급기간별 세부담의 현재가치를 알 수 있다.

이 근로자가 10년 유기연금을 선택한 경우, 매년 15,832,157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55세에 이미 퇴직연금 적립액의 25%를 비과세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연금소득공제비율은 57.5%에서 32.5%로 줄어들고 과세비율은 67.5%가 된다.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표 V-7>에서 보다는 다소 많지만 현행 세제 하에서 차이보다는 훨씬 작다. 이 방안은 퇴직급여 관련 소득세제를 일원화 경우보다 연금소득세제의 현재가치가 약간 많지만 근로자들의 일시금 선호 성향을 반영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V-8> 비과세퇴직일시금 지급

(단위 : 원)

수급기간	비과세 일시금	연금액	연금소득공제비율	과세표준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5년	39,977,853	27,945,884	32.5%	18,862,310	2,495,216	10,655,282
10년	39,977,853	15,832,157	32.5%	10,686,048	1,023,489	7,714,674
15년	39,977,853	11,889,007	32.5%	8,024,586	722,213	7,249,269
20년	39,977,853	9,986,030	32.5%	6,740,155	606,614	7,249,269
25년	39,977,853	8,896,487	32.5%	6,004,759	540,428	7,249,269

<표 V-9> 비과세일시금 비율별 소득세 비교

(단위 : 원)

수급 기간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50% 연금	75% 연금	100% 연금
5년	6,116,013	9,402,542	10,655,282	8,327,915
10년	6,116,013	6,622,899	7,714,674	6,085,586
15년	6,116,013	6,622,899	7,249,269	6,085,586
20년	6,116,013	6,622,899	7,249,269	6,085,586
25년	6,116,013	6,622,899	7,249,269	6,085,586

연금수급권 발생연령 연령인 55세 시점에서 비과세 일시금을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0%(전액 연금), 25%, 50%까지 받는 경우를 비교한다 (<표 V-9> 참조). 이 경우 퇴직급여공제비율은 각각 57.5%, 32.5%, 7.5%가 된다. 따라서 적용비율은 퇴직연금 적립금 중 일정비율을 비과세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연금소득세 현재가치는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Simulation한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적정 퇴직일시금액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비과세일시금이 퇴직당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연금수급기간, 퇴직연금 수급자격발생시점에서의 일시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전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지만,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형성과 일시금 수요의 동시 충족을 위해서 도입해볼 만하다.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중도 대출을 허용하되, 이를 비과세로 하고 미상환을 추후 연금수령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의 제안취지 중의 하나인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가교 역할 수행과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필요한 세제차원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제도와 퇴직연금관련 세제를 급부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세제체계와의 차이점 및 퇴직급여 관련세제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Simulation기법을 통해 퇴직급여 급부단계 세액과 적용한계세율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앞서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퇴직소득세제와 퇴직연금 소득세제를 비교한 결과, 퇴직일시금 세제혜택이 큰 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연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공제액이 낮아서 퇴직연금 전환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주요 외국의 세제체계와 우리나라의 체계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은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영국은 비과세 일시금을 전 계층에게 허용하지만, 미국의 경우 일시금 및 연금소득 경감혜택을 특정 자격자에게만 주고 있다.

셋째, Simulation 추정결과 중 소득계층별 Simulation 결과에 따르면,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급부기간

을 장기간으로 가져갈 유인이 일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입연령·기업규모·재직기간별 Simulation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액보다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크게 추정되었다. 개인퇴직계좌(IRA) 역시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결과를 종합하면, 젊은 계층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할 유인이 일부 있지만, 대기업소속 근로자, 고임금 근로소득자, 그리고 장기근속자일 경우 연금소득세액이 전반적으로 퇴직소득세액보다 높아서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퇴직연금세제 개정의 기본방향을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가교연금으로 기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세부 방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방안은 퇴직연금이 가교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설령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연금으로 간주하더라도, 퇴직급여비례공제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20~30% 정도로 축소해도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제고될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퇴직연금 연간 수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상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시켜 과세하는 방안은 퇴직소득성격에 충실한 적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해 현행 연금소득세액보다는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금소득 공제금액 인상방안은 근속연수가 16년 미만인 근로자이면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아지지만, 16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이면 반대로 나타나서 가교연금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금소득의 50%를 공제해 주는 연금소득비례공제를 신설할 경

우,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하였다.

다섯째,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섯째,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인데, 이는 외국의 세제체계 중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영국제도를 수용한 방안이다. 이 경우 연금수급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금소득세액과 퇴직소득세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까지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공히 유사한 소득세액이 산출되었다.

일곱째, 위와 같은 퇴직관련소득 일원화 방안에서는 퇴직연금적립금액 중 비과세되는 부분에 한해 퇴직일시금 지급방안도 고려해본 결과 퇴직일시금보다는 전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세액 계산시 퇴직연금 이외에는 소득이 없고, 각 출단계의 세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되어 기업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이외에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까지도 반영한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법인세법상의 기업들의 퇴직연금 각출금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종업원이 각출할 경우의 추가적인 세제혜택문제와 연금과세 상의 차이점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원식,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6.
- 김원식·노인철, 『퇴직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2.
- 김화동, 『일본의 신퇴직연금제도-일본판 401k』, 서울: 명경사, 2002.
- 류건식·이태열,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 연구』 제14권 제3호, 보험개발원, 2003.
- 류건식 외 2인,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보험개발원, 2003.
- 박홍민·이경희,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2002. 3.
- 방하남 외 5인,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배준호, 「개인연금의 과세유형이 국민저축과 정부채무에 미치는 효과」,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 손성동·김상의, 『퇴직연금세제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01.10.
- 양성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 3.
- 우영호·고광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1.
- 전영준, 『연금과세체계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 _____, 「퇴직연금관련 조세제도 정비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9.
- _____, 『퇴직연금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
- _____, 「퇴직연금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2.7.

- 전춘옥,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우대와 세제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2.
- 전춘옥 외 2인, 「퇴직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무학연구』 제14권, 한국세무학회, 1999.
- 정운오·박찬웅, 「개정 세법상의 연금과세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01.
- 정요섭,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제원의 분석과 평가」, 『리스크 관리연구』 제12집 가을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9.
- _____, 「신·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효과 비교」, 『리스크 관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1.
- _____, 「신·구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리스크 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3.
- 한도숙 외 3인,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5.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2003.
- _____, 『장래인구 추계 2000~2050』, 2001. 12.
- _____, 『2003년 혼인·이혼통계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2004.3.
- Antolin P., A. de Serres, and C. de la Maisonnette, Long-Term Budgetary Implications of Tax-Favored Retirement Saving Plans, OECD, 2004.
- Disney, R.F. and E. R. Whitehouse, Cross-Country Comparison of Pensioners Incomes, Research Report, No. 142,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London, 2001.
- Slesnick, T., and J.C. Suttle., IRAs, 401(k)s & Other Retirement Plans (5th edition), Nolo, 2003.
- J.K. Lasser Institute, J.K. Lasser's Your Income Tax 2004, John Wiley & Sons, inc., 2003.

11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Inland Revenue,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 guide for Members of tax approved schemes, Personal Taxpayer Series IR2, United Kingdom, 2003. 2.

Westbrook, P., J.K. Lasser's New Rules for Retirement and Tax, John Wiley & Sons, inc., 2001.

<http://www.inlandrevenue.gov.uk>

<http://www.irs.gov>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계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11

2003-6 보험실계사 조직의 개편 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12

2004-1 부유층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책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 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 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 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오영수,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 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7

정 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계간 _____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 보험통계월보 - 영문발간자료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저 자 약 력

임병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University of Wyoming, Research Fellow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billforest@kidi.or.kr)

김세환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shkim@kidi.or.kr)

연구보고서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계체계 연구

발행일 2004년 9월 日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신우씨엔피

전화 (02) 2267-4112

ISBN 89-5710-013-1 93320

정가10,000원